

**성범죄자 신상정보공개와  
재범방지를 위한 법리적 검토**

**성범죄자 신상정보공개와  
재범방지를 위한 법리적 검토**

**치안정책연구소 생활안전대책연구실**

**선임연구관 김 학 신**

## < 목 차 >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목적 .....	1
제2절 연구 범위와 방법 .....	4
제2장 성범죄자의 신상공개와 재범방지 .....	7
제1절 신상공개제도 의의 및 현황 .....	7
1. 신상공개제도의 의의 .....	7
2. 신상공개제도의 도입과 변천 .....	8
3. 국내 성범죄자 공개 현황 .....	10
제2절 신상공개제도의 내용 .....	15
1. 신상정보의 등록 .....	15
2. 등록된 신상정보의 공개제도 .....	17
3. 등록된 신상정보의 고지제도 .....	19
제3절 재범방지를 위한 성범죄자 신고 포상금 제도 .....	21
1. 성범죄자 포상금 제도와 대상 범죄 행위 .....	21
2. 포상금의 지급 기준 .....	22
3. 포상금 지급 절차 .....	24
4. 포상금의 지급액과 환수 .....	24
제4절 재범방지를 위한 성범죄자 전자발찌 제도 .....	26
1. 최근 강간죄를 포함한 강력범죄 재범 현황 .....	26
2. 재범방지를 위한 전자발찌 제도 .....	28

제3장 외국의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 .....	34
제1절 미국 .....	34
1. 성범죄자 석방 공고법 (Megan' s Law) .....	34
2. 연방정부의 성범죄자 등록 시스템 .....	37
제2절 영국 .....	39
1. 성범죄자법(Sex Offender Act 1997) .....	39
2. 성범죄법(Sexual Offences Act 2003)에 의한 성범죄자 정보공개 ..	40
3. 다기관 공중보호 규정(MAPPA) .....	41
제3절 일본 .....	44
1. 고바야시 가오루(小林薰) 사건 .....	44
2. 성범죄자의 신상 정보 공유 .....	47
제4절 프랑스 .....	49
제4장 성범죄자 신상공개에 따른 법리 검토 .....	50
제1절 신상공개의 법리적 검토 .....	50
1. 긍정적인 측면에서의 법리적 검토 .....	51
가.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	51
나. 비례성의 원칙 .....	54
다. 평등의 원칙 .....	56
라. 적법절차의 원칙 .....	58
2. 부정적인 측면에서의 법리적 검토 .....	59
가.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	59
나. 인격권 .....	61

다. 평등의 원칙 .....	63
3. 사 건 .....	64
제2절 성범죄 재범방지를 위한 전자발찌제도의 검토 .....	66
1. 긍정론 .....	67
2. 부정론 .....	68
3. 관련 판례 .....	69
4. 사건 .....	70
제5장 결 론 .....	72
【 參考文獻 】 .....	75

### < 표 목차 >

<표 1> 2011 경찰백서에 의한 재범자 현황(형법범·특별법범) .....	27
<표 2> 2011 경찰백서에 의한 재범자 현황(강간·살인·강도 등) .....	28

### < 그림 목차 >

<그림 1> 2012 우리나라 특별시·광역시/도 성범죄자 통계 .....	12
<그림 2> 2012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통계 .....	12
<그림 2> 2012 성인 여성 대상 성범죄자 통계 .....	12

# 제1장 서론

## 제1절 연구목적

매년 아동·청소년·성인 여성을 대상으로 한 강간, 강제추행, 성폭행 후 살해 등 잔인한 성폭력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2006년 대구 여고생이 성폭행으로 살해된 사건 및 여약사가 납치·살해된 사건, 2007년 제주 초등학생이 납치 후 살해된 사건 및 안양 초등학생이 납치 살해된 사건, 2008년 8세 여아를 성폭행한 조두순 사건<sup>1)</sup> 이후 2010년 부산 여중생 성폭행·납치 살해 한 김길태 사건,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김수철 사건, 2011년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에서 청소년을 강간한 사건, 2012년 아들 여자친구를 성폭행 사건 등 국민들을 분노케하는 성폭력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성범죄자들은 대부분 성범죄 전과가 있으며, 이 성범죄 전과자들에 의한 범행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2011년에 한해 발생한 13살 미만 어린이에 대한 성폭력 범죄는 1,200건 가까이 되는데, 이는 하루 평균 3-4명 이상의 어린이들이 성폭력 범죄에 시달리고 있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성폭행을 당한 당사자는 물론이고 그 가족들까지도 몸과 마음에 큰 상처와 고통을 주고, 삶을 포기하며, 더불어 심한 경우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은 자살 등을 통해 삶을 마감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아동 성폭력 범죄 대응책의 일환으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

1) 조두순 사건의 경우 범죄의 잔혹성의 정도를 보아 죄질이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판결에서 징역 12년과 전자발찌 부착 7년, 신상정보공개 5년이 확정하여 여론의 많은 비판을 받았다.

성폭행범 특히, 16살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소아성기 호증(성도착증)자에게 루프린이라는 약물을 투여하고자 하는 화학적인 거세 명령이 내려졌다.<sup>2)3)</sup> 이 법안 발의 후 3년 8개월, 그리고 법 시행 10여개월 만이다. 물론 이 약물 투여로 인한 화학적 거세의 실효성과 약품의 안전성, 범인의 인권침해 등의 다양한 반대의견도 제기되고 있지만,<sup>4)</sup> 성폭행범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예방을 원하는 국민들은 이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성폭력범죄의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으로 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피의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동법에 의하여 19세 이상 대상 성폭력 범죄로 인한 신상정보 공개는 2011년 4월 16

- 
- 2) 2012년 5월 21일 아동 성폭력범에 대해 국내 최초로 ‘화학적 거세’ 명령이 내려졌다. 16살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에게 적용되는 화학적 거세가 법 시행 10개월 만에 첫 투여자가 나오게 된 것이다. 성선자극호르몬 길항제인 루프린을 인체에 투여해 성충동을 억제하는 화학적 거세이다. 최은수, 성을 거세당한 성폭력범...과연 효과가 있을까, MBN, 2012. 6. 8.
- 3) 박민식 새누리당 국회의원은 “화학적 거세는 인권 선진국이라고 하는 미국·유럽 등의 나라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으며, 도입하는 나라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 게다가 미국 오리건주에서 2000년부터 2004년까지 가석방된 성폭력 범죄자의 재범률 분석 결과를 보면, 약물치료를 받은 사람의 재범률은 0%인 반면에 치료에 불응한 사람 중 재범률은 18.2%로 나타났다고 한다. 무엇보다도 화학적 거세는 단순한 처벌이 아닌 재발을 막기 위한 치료이고, 단순한 약물요법이 아닌 행동치료와 심리치료를 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처벌 위주의 기존 제도들과는 다르다는 점에서 그 효과를 더욱 기대해 봄직하다” 고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 4) 순천향대 장석현 교수는 다음과 같은 부분에 대하여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첫째, 약물치료 대상자 선정의 객관성 부족이다. 둘째, 성범죄자에 대한 약물치료를 형벌로 볼 것인가, 아니면 보안처분으로 볼 것인가를 둘러싼 문제이다. 성범죄자의 경우에는 형벌 이외에 신상공개, 전자발찌, 약물치료 등을 이중삼중의 제재수단을 부과하게 되어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셋째, 성범죄자의 약물치료 비용(연간 500만원) 부담에 따른 예산 낭용 문제다. 마지막으로 화학적 거세가 실질적인 범죄예방 효과가 얼마나 될지도 미지수다.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대상자의 인권침해 소지를 줄이고 법적 운용의 안정성과 일관성을 확보함은 물론 자발적 동의 등 자기결정권의 침해를 최소화하며 비용 부담 등에서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부에서 시행되었지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상공개는 이미 2000년부터 시행되어 온 상태여서 만일 성범죄의 피해자가 19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일 경우에는 동법에 의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의 대상자가 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성폭력범죄자 신상정보 공개는 19세 이상 대상 성폭력 범죄로 유죄확정의 판결을 받은 자들의 신상을 이름·나이·주소 및 실제거주지(읍·면·동까지)·신체정보(키, 몸무게)·사진·성폭력범죄 요지 등의 내용을 공개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신상공개는 동법의 부칙에 의거하여 2011. 4. 16 이후 최초로 선고를 받아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부터 적용이 되며, 우편고지는 법 제42조에 따라 고지대상자가 사는 거주지의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둔 세대주에 우편으로 고지하게 된다. 그러나 성폭력 범죄로 신상정보공개 대상이 되었더라도 법률에 따라 구속·수용중인 기간을 공개기간에서 제외되며 출소 후 공개가 된다.

현재 정부는 성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게 되면, 잠재적인 성폭력 범죄자의 범행을 억제하고, 자율적인 성폭력 범죄 예방에 많은 도움을 주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또한 재범 방지를 위하여도 필요하다고 한다. 더불어 대다수 국민적인 요구는 아동·청소년·성인 등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의 신상공개에 대하여는 찬성을 하고 있다. 한 예로 국가청소년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며, 초등학교 이하 자녀를 둔 전국 학부모의 90% 가까이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에 관하여 적극적인 찬성을 표명하고 있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의 학자들은 성범죄자 신상공개에 관한 법리적인 문제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특히, 성폭력 범죄자의 신상공개를 한다고 해도 성범죄 예방 및 억제의 실효성이 불확실하고, 이외에도 행복추구권, 평등의 원칙 위배, 인격권의 침해, 이중처벌금지 등의 법리적인

이유를 들어 성범죄자의 신상공개에 대하여 반대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이러한 찬·반 양쪽의 팽팽한 논리에도, 현재 대다수의 국민들은 성폭력 범죄가 언제 발생할지 모르며, 그 성폭력 범죄의 대상자가 내 가족, 친척, 친구, 자녀 등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에 쌓여 있는 것이 현실이다.

2012년 6월 14일 기준 「성범죄자 알람e」를 통한 신상공개 통계에 의하면, 성범죄자 신상정보가 공개된 인원은 전체 1,931명이고, 이중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수는 1,569명으로 81.2%를 차지하고 있어, 성범죄자의 주된 대상자는 아동·청소년임을 통계상으로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성범죄자의 신상공개가 제2, 제3의 성폭력 범죄를 예방, 억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법리적으로 검토해 보고, 특히, 전체 성범죄 중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중심으로 하여 이에 대한 문제점 분석하고자 한다. 더불어 법적인 쟁점에 대하여는 학자들과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의 판결을 중심으로 하여 성범죄자의 인권이 중요한지 성폭력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인권이 중요한지 분석하고자 한다.

## 제2절 연구 범위와 방법

최근 아동과 청소년,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성(性)폭력 범죄는 우리의 가정과 사회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으며, 더불어 이들은 성폭력을 위해 더욱더 교묘해지고, 지능화, 흉폭화, 잔인화 되어가고 있는 것이 요즘의 추세이다. 특히, 성폭력 범죄는 살인이라는 결과로 이어지는 것이 다양한 성폭력범죄 사건을 통하여 통계로 보여지고 있다.

본 연구는 다양한 성폭력 범죄를 예방, 억제하기 위한 대안으로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와 전자발찌제도가 재범방지에 효과적인지,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심도있게 연구하고자 한다.

더불어 본 연구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하고자 한다.

제1장에서는 본 연구의 목적과 범위 및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2장에서는 성범죄자 신상공개에 관한 전반적인 부분으로 신상공개제도의 의의와, 도입 그리고 최근의 여성가족부가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을 통한 신상공개제도 등 변천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며, 더불어 성범죄자의 국내 현황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신상정보공개제도의 구체적인 사안으로는 신상정보등록, 등록된 신상정보의 공개제도 및 고지제도에 대하여 살펴보고, 재범방지를 위한 성범죄자 신고포상금 제도와 성범죄자 전자발찌제도도 성범죄자 재범방지 측면에서 신상공개제도와 더불어 검토하고자 한다.

제3장에서는 선진 외국의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미국의 「성범죄자 석방공고법」 일명 메건법(Megan's Law)이라고도 하는데, 메건법이 어떻게 미국에 정착되고, 이 법이 미국법에 미친 영향을 검토해보고, 성범죄자의 재범방지를 위한 미 연방정부의 성범죄자 등록시스템에 대하여도 검토해보고자 한다.

다음으로 영국의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로 성범죄자법(Sex Offender Act)과 성범죄자법에 의한 성범죄자 정보 공개제도, 다기관 공중보호 규정(Multi Agency Public Protection Arrangement: MAPPA)에 대하여 검토해보고자 한다. 또한 일본의 고바야시 가오루 사건을 계기로 본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유와 프랑스의 「성범죄자 자동화 사법적 국립전산시스템」에 관하여도 살펴보고자 한다.

제4장에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로 인하여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는 법리적인 문제점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특히, 성(性)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제도에 대한 기본권 침해 여부와 관련하여 학자들과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의 의견들을 중점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성범죄자의 신상공개가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 평등의 원칙, 적법절차의 원칙, 인격권 등의 위헌여부에 대하여 학자들과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중심으로 법리적인 검토를하고자 한다.

그리고 성범죄자의 재범방지를 위한 전자발찌 제도에 관하여 이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비교, 검토하고 이와 더불어 전자발찌 관련 판례를 분석하고자 한다.

제5장에는 결론 부분으로 위에서 분석한 다양한 법리적 쟁점과 문제점들에 대한 앞으로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성범죄자에 신상공개제도에 관한 차후의 법적인 보완점을 마련하고, 효과적인 성범죄자 재범방지를 위한 개인적인 의견을 개진 및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방법으로는 문헌적인 조사·연구 방법을 활용하고자 한다. 또한 이 연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내·외 문헌 자료와 경찰청 내부문건 자료와 각 국가의 대사관과 영사관을 통한 수집된 자료를 참고로 하여 성범죄자의 실태 및 외국의 실태를 분석하고, 더불어 법무부, 검찰·법원, 헌법재판소, 국회 등 국가기관과 관련 민관기관에서 발행하는 각종 통계자료 그리고 형사법적 관련 논문 등 선행된 연구 문헌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더불어 실무상의 사례는 경찰과 검찰기관의 수사 사례를 참조하고, 다양한 관련 유관기관의 인터넷 자료와 국회의 입법적 자료도 활용하고자 한다.

## 제2장 성범죄자의 신상공개와 재범방지

### 제1절 신상공개제도 의의 및 현황

#### 1. 신상공개제도의 의의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라 함은 성매수, 강간, 강제추행, 매매춘 알선 등의 성범죄 행위를 범하고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당해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제도를 말한다.

우리나라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제도는 2000. 7.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처음 도입되었다. 그리고 이를 근거로 하여 2001. 8. 첫 신상공개제도를 시행하였다. 이것은 징역형이나 벌금형 등 형사처벌을 가하는 것과는 별도로, 형이 확정된 자의 신상을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다.

신상정보의 공개방식은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중에서 신상공개 대상자를 선별하고, 세부 정보를 제외한 채 ‘성명, 연령, 직업, 동 단위까지의 주소’ 정도를 관보와 인터넷에 게재하는 것으로 하였는데, 이에 대해서는 시행 초기부터 이중처벌금지의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한다는 비판,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된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으나, 헌법재판소는 ‘합헌 4 : 위헌 5’의 의견으로 가까스로 합헌결정을 내린 바 있다.<sup>5)6)</sup>

---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 6. 26, 2002헌가14.

6) 이 판결에 앞서 미국 연방 대법원은 2003. 3 알래스카 주의 신상등록·공개법이 합헌이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DELBERT W. SMITH AND BRUCE M. BOTELHO, PETITIONERS v. JOHN DOE I

## 2. 신상공개제도의 도입과 변천

신상공개제도가 도입될 1990년대 후반, 전통적 유교문화의 바탕 위에서 급격한 산업화를 겪은 우리 사회에는 왜곡된 성문화가 만연되어 있었다. 어린 청소년들을 성적인 상대로 선호하는 비뚤어진 성의식에 대한 사회적 무감각이나 남성에게는 관대한 성풍조 등으로 인하여 우리가 적극 보호해야 할 아동 및 청소년의 성이 유린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각종 음란물의 범람으로 인한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었다. 특히 우리 사회에서도 일본의 원조교제와 유사한 형태인 성인간의 성매매가 성행하게 되면서 이를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sup>7)</sup>

이후 2000년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우리 사회는 본격적으로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는 2000년 법 시행 이후 10여년 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다. 2006년 6월까지의 성매수자 등을 대상으로 계도문 방식의 신상공개를 하였으나, 실제 성범죄자의 신상을 구체적으로 인지 할 수 없어 그 실효적인 측면에서는 많은 부분 미흡한 것이 사실이었다.

이에 따라 성범죄자 신상공개는 국가청소년위원회 등록 및 경찰서 열람방식으로 변경되었는데, 청소년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으로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강간, 강제추행 등의 죄를 다시 범할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등록 및 열람 대상으로 함에 따라 대상인원이 극히 제한적이었다.<sup>8)</sup>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등록대상이 되도록 하고, 13세 미만 청

ETAL No 01-729.

7) 정현미·윤지영,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와 미국 매간법의 비교고찰, 이화여자대학교 법학논집 제12권 1호, 2007, 180-181면.

8) 당시 2006. 6. 30 - 2008. 2. 3 기준 총 53명, 열람제공 23, 재소자 30.

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 13세 미만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로서 13세 미만 청소년 대상 성범죄 우려자 등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그 신상정보를 5년간 경찰서 열람에 제공하도록 하는 명령을 선고하였다. 그런데 경찰서를 통한 열람은 접근성의 불편 등 지역주민의 이용저조로 인하여 실질적인 성범죄자의 재범방지 효과가 미흡하였다.<sup>9)</sup>

이에 따라 여성가족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아동 및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기존 경찰서의 열람방식에서 인터넷 공개를 통한 방식으로 변경하였는데, 특히,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자 중 재범의 우려가 있어 법원으로부터 신상공개 명령을 선고 받은 자에 대한 신상정보를 최장 10년간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하기로 하였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그 근거를 두고 있는 인터넷 신상공개제도는 예비 범죄자의 경각심 제고를 통한 성범죄의 억지와 학교, 집 주변 범죄전력자 사전 인지를 통한 적극적인 재범방지 대처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동법 상 공개대상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르고 법원에서 유죄확정 판결과 함께 공개명령이 선고된 자이며,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수감자의 경우에는 형의 집행이 종료 또는 면제된 후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야 하며, 공개기간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거하여 3년이하의 징역 및 금고는 5년까지, 3년초과의 징역 및 금고는 10년까지 공개할 수 있다.<sup>10)</sup>

인터넷을 통한 신상공개정보는 성명·나이·주소 및 실제거주지(읍·면·동까지), 신체정보(키·몸무게)·사진·성범죄 요지를 공개할 수 있

9) 김현원,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와 재범방지, 아동성폭력 재범방지정책과 인권토론회, 2010, 131면.

10) 인터넷 신상등록 및 공개처리 절차는 우선 법원이 공개명령을 선고하고 이를 대상자 및 여성가족부에 통지하고, 이후 대상자는 관할 경찰서에 신상자료를 제출하고, 경찰서는 여성가족부에 송달하며, 여성가족부는 이 신상정보를 등록 및 인터넷에 공개([www.sexoffender.go.kr](http://www.sexoffender.go.kr))를 한다.

다.11) 성범죄 요지의 경우는 판결일자, 죄명, 선고형량 및 해당 사건의 범죄사실 요지를 표기하되, 피해자를 알 수 있는 내용은 표기하지 아니하여, 피해자에 대한 정보는 적극적으로 보호하고자 하였다.

인터넷 열람은 20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전용공개사이트인 ‘성범죄자 알림e’에서 성인인증을 거쳐 범죄자의 사진, 신체정보 등을 포함한 신상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하였다.

신상정보의 인터넷 공개는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이 주 목적이므로 공개정보를 확인한 사람이 “신문·잡지 등 출판물, 방송 또는 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거나 “공개정보를 수정 또는 삭제”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

2010년 인터넷 신상정보공개제도 이후, 2011년 4월,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우편으로 고지하는 첫 통보 성범죄 대상자가 나왔다. 이 대상자는 주거침입 강간 혐의로 기소되어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3년간 신상정보 공개, 고지명령을 선고받아, 이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담은 우편을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자녀가 있는 세대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발송하였다. 이는 주민들이 이웃에 성범죄자가 살고 있다는 정보를 사전에 파악함으로써 제2, 제3의 성범죄 피해를 스스로 예방하고자 시행된 제도이다.

### 3. 국내 성범죄자 공개 현황

11) 신상공개 정보의 구체적인 형태와 내용은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규정되어 있다. 1. 성명: 한글과 한자로 표기하되, 외국인인 경우 한글·자국어·영문 세 가지로 표기한다. 2. 나이: 주민등록표상의 나이. 다만, 외국인인 여권이나 외국인등록증의 나이로 표기한다. 3. 주소 및 실제 거주지: 「주민등록법」에 따라 신고한 주소와 실제 거주지 주소를 표기하되, 읍·면·동까지로 한다. 4. 신체정보: 키와 몸무게를 표기하되, 키는 센티미터로, 몸무게는 킬로그램으로 한다. 5. 사진: 등록된 사진을 게재한다. 6.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요지: 판결일자, 죄명, 선고형량 및 해당 사건의 범죄사실 요지를 표기하되, 피해자를 알 수 있는 내용은 표기하지 아니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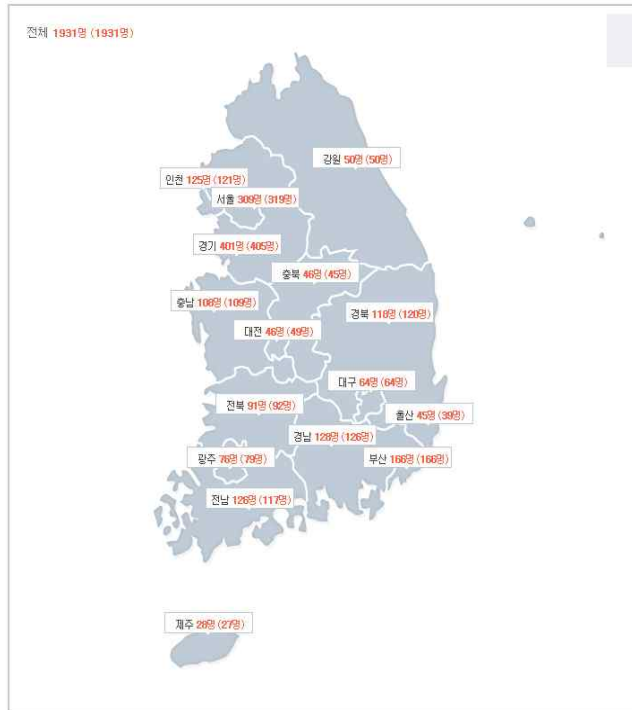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성범죄자 알림e’의 통계에 의하면, 2012년 6월 현재 우리나라 성범죄자 공개 현황은 다음과 같다.<sup>12)</sup> 우선 아동·청소년, 성인 여성 모두를 대상으로 한 전체 성범죄자는 1,931명이다. 이 중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는 1,569명(81.2%)이고, 성인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는 362명(18.7%)이다. 아래 통계에서 보듯이 우리나라 성범죄자의 81.2%는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성폭력 범죄행위를 저지르고 있어 이들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가 얼마나 심각한 지를 보여주고 있다.

전체적으로 각 특별시 및 광역시, 도별 성범죄자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소를 중심으로 한 통계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 <그림 1> 과 같다. 아래 그림상의 통계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주소 공개인원수이며, ()는 실제 거주지 주소 공개자 수이다.

아래 <그림 1> 은 전체 성범죄자 통계 현황을 표시한 것으로 실제 거주지 주소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전체 성범죄자는 1,931명으로 그 중 서울 319명(16.5%), 경기405명(20.9%), 인천 121명(6.2%), 부산 166명(8.5%), 경남 126명(6.5%), 경북 120명(6.2%), 전남 117명(6.0%), 충남 109명(5.6%), 전북 92명(4.7%), 광주 79명(4.0%), 대구 64명(3.3%), 강원 50명(2.5%), 대전 49명(2.5%), 충북 45명(2.3%), 울산 39명(2.0%), 제주 27명(1.3%) 이다. 특히, 서울, 경기, 인천, 부산의 대도시를 합치면, 총 성범죄자 수는 1,011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성범죄자 수의 52.3%나 차지하고 있다. 이 통계에 의하면, 성범죄자가 주로 대도시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더불어 대도시에서 주로 성폭력범죄가 발생됨을 보여주고 있다.

#### <그림 1> 2012 우리나라 특별시·광역시/도 성범죄자 통계 지도(전체)

12) 이 통계는 매월 변화가 있기에 본 통계는 2012. 6. 14일 기준으로 작성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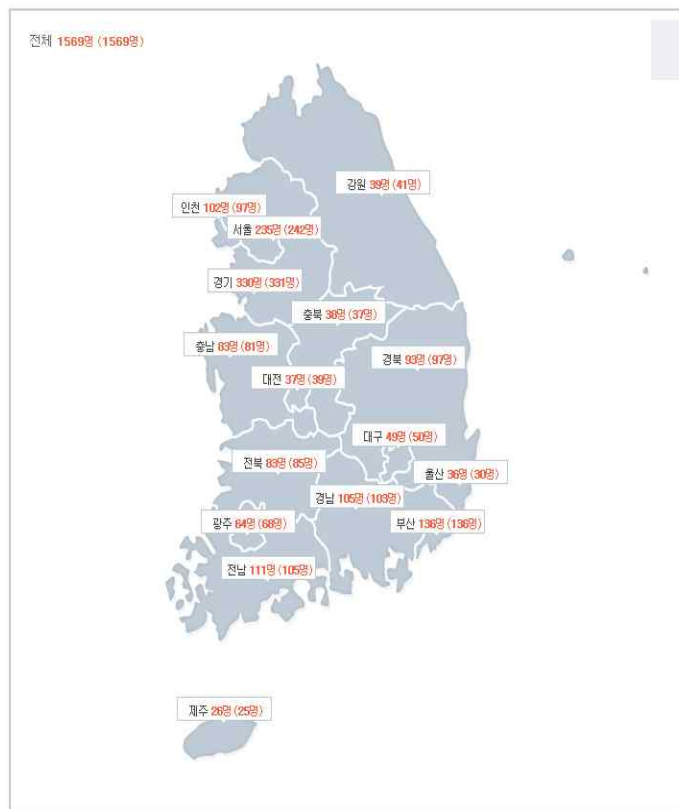
※ 출처 : 「성범죄자 알림e」 통계자료, 2012. 6. 14 기준.

다음은 전체 성범죄자의 81.2% 나 차지하고 있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자의 각 특별시·광역시·도 성범죄자의 통계 지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아래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전체 성범죄자는 1,569명으로 그 중 서울 242명(15.4%), 경기331명(21.0%), 인천 97명(6.1%), 부산 136명(8.6%), 경남 103명(6.5%), 경북 97명(6.1%), 전남 105명(6.6%), 충남 81명(5.1%), 전북 85명(5.4%), 광주 68명(4.3%), 대구 50명(3.1%), 강원 41명(2.6%), 대전 39명(2.4%), 충북 37명(2.3%), 울산 30명(1.9%), 제주 25명(1.5%) 이다. 아동·청소년

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에서도 서울, 경기, 인천, 부산의 대도시를 합치면, 총 성범죄자 수는 896명으로 57.1%를 차지하고 있다.

<그림 2> 2012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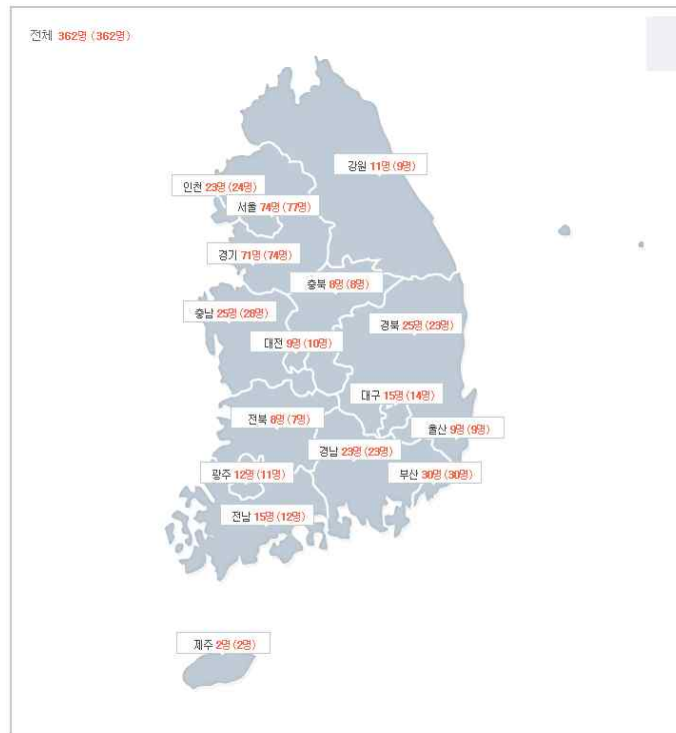


※ 출처 : 「성범죄자 알림e」 통계자료, 2012. 6. 14 기준.

다음은 전체 성범죄자 중 성인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는 362명으로 전체의 범죄자 중 18.7% 나 차지하고 있다.

아래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성인 여성을 대상으로 한 전체 성범죄자는 362명으로 그 중 서울 77명(21.2%), 경기 74명(20.4%), 인천 24명(6.6%), 부산 30명(8.2%), 경남 23명(6.3%), 경북 23명(6.3%), 전남 12명(3.3%), 충남 28명(7.7%), 전북 7명(1.9%), 광주 11명(3.0%), 대구 14명(3.8%), 강원 9명(2.7%), 대전 10명(2.7%), 충북 8명(2.2%), 울산 9명(2.7%), 제주 2명(0.5%) 이다. 성인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에서도 서울, 경기, 인천, 부산의 대도시를 합치면, 총 성범죄자 수는 896명으로 56.6%를 차지하고 있다.

<그림 3> 2012 성인 여성을 대상 성범죄자 통계



※ 출처 : 「성범죄자 알림e」 통계자료, 2012. 6. 14 기준.

## 제2절 신상공개제도의 내용

### 1. 신상정보의 등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피해아동·청소년을 위한 구제 및 지원절차를 마련하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

특히, 동법 제5장에서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의 신상정보를 등록·공개·취업제한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sup>13)</sup>

기존의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장에서도 청소년대상 성범

- 13) 제38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3항의 공개정보를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거나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이 법에 따른 신상공개 결정 또는 열람명령·공개명령을 선고받고 다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3.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4.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5.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범하였으나 「형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 자로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정보의 공개기간(「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간을 초과하지 못한다)은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기산한다. 다만, 공개명령을 받은 자가 실행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때부터 기산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공개하도록 제공되는 등록정보는 1. 성명 2. 나이 3. 주소 및 실제거주지(읍·면·동까지) 4.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5. 사진 6.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요지.

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의 신상정보 등록·열람·취업제한 등의 규정을 두고 있지만, 이를 아동에게까지 확대하면서 인터넷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였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우선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를 말하며, 법원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있음을 등록대상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또한 법원은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고지사항을 서면으로 판결문 등본에 첨부하여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33조 참조).

또한 등록대상자의 신상정보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40일 이내에 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sup>14)</sup> 다만, 등록대상자가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경우에는 그 교정시설의 장 또는 치료감호시설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또한 등록대상자는 이에 따라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진은 최초 등록일부터 1년마다 새로 촬영한 사진을 제출하되,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자의 경우에는 석방 또는 치료감호 종료 전에 새로 촬영한 사진을 교정시설 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동법 제34조 참조).

이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등록하고,<sup>15)</sup> 이러한 등

14) 그 내용은 1) 성명, 2) 주민등록번호, 3) 주소 및 실제거주지, 4)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5)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6) 사진(등록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촬영된 것) 및 7) 소유차량의 등록번호 등이다(동법 제34조 제1항).

15) 등록대상자의 신상정보 제출의무에 의해 확보된 제출정보 및 변경정보는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달되고(동법 제34조 제3항), 여성가족부장관은 이 정보와 등록대상자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경력정보를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정보에 대해 등록일자를 밝혀 등록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여성가족부장관은 등록정보의 조회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 등록대상자가 제출정보 또는 변경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신상정보의

록정보를 관리해야 한다.<sup>16)</sup>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내용(2010년 3월 15일 개정)에는 인터넷 신상정보 등록·인터넷 열람제도와 관련하여 인터넷 열람방법 및 절차, 공개정보 유출방지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여성가족부 장관은 인터넷 열람명령 집행을 위하여 신상정보 열람을 위한 전용 웹사이트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전용 웹사이트를 이용하여 공개정보를 열람하려는 사람은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또는 인터넷상 개인식별 번호로 실명인증을 받고, 공인인증서, 주민등록증 발급일, 휴대전화 번호 중 어느 하나를 활용하여 본인 확인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공개정보를 열람한 사람의 신상정보와 접속정보를 일정 기간 보관·관리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0세 이상의 성인자이면 실명인증 또는 본인확인을 거쳐 누구나 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정보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전용 웹사이트에 등록된 공개정보의 유출 방지하기 위하여 공개정보의 단계적 접근, 공개정보 이용자에 의한 입력 및 출력 금지, 보안 등 기술적 조치를 하고, 이를 상시 감시하도록 하고 있다.

## 2. 등록된 신상정보의 공개제도

법원은 공개대상자에 대하여 판결로 일정한 정보를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공개명령을 아동·청소년대상 성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조회를 요청하여 등록할 수 있다(동법 제35조).

16) 여성가족부장관은 등록정보를 최초 등록일(등록대상자에게 통지한 등록일)부터 20년간 보존·관리하여야 하고, 이 등록기간이 끝나면 이를 즉시 폐기하고 그 사실을 등록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대상자가 등록 원인이 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교정시설에 수용된 기간은 등록기간에 넣어 계산하지 아니한다. 관할경찰관서의 장은 등록기간 중 매년 1회 등록정보의 변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동법 제35조).

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sup>17)</sup> 그러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거나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등록된 신상정보의 공개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①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② 이 법에 따른 신상공개 결정 또는 열람명령·공개명령을 선고받고 다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③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④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⑤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범하였으나, 「형법」상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 자로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이다.

등록된 신상정보의 공개기간은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기산한다. 다만 공개기간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sup>18)</sup>에 따른 기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공개명령을 받은 자가 실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

17) 이 경우 공개하도록 제공되는 등록정보는 1) 성명, 2) 나이, 3) 주소 및 실제거주지(읍·면·동까지로 한다), 4)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5) 사진 및 6)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요지 등이다. 공개정보의 구체적인 형태와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동법 제38조 참조).

18)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①수형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하고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때에 그 형은 실효된다. 다만, 구류(拘留)와 과료(科料)는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때에 그 형이 실효된다. 1. 3년을 초과하는 징역·금고: 10년 2. 3년 이하의 징역·금고: 5년 3. 벌금: 2년

② 하나의 판결로 여러 개의 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가장 무거운 형에 대한 제1항의 기간이 경과한 때에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다만, 제1항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징역과 금고는 같은 종류의 형으로 보고 각 형기(刑期)를 합산한다.

은 경우에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때부터 기산한다.

등록된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명령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집행하며, 이를 위하여 법원은 공개명령의 판결이 확정되면 판결문 등본을 지체 없이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공개명령의 집행·공개절차·관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동법 제39조).

이 공개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실명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며, 열람을 위한 실명인증, 공개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기술 및 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3. 등록된 신상정보의 고지제도

법원은 등록된 신상정보 공개대상자 중 다음 두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②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범하였으나, 「형법」상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 자로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즉, 고지대상자에 대하여 판결로 공개명령 기간 동안 법이 정한 고지정보를 고지대상자가 거주하는 읍·면·동의 지역주민,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장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고지명령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거나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고지하지

않을 수 있다.

등록된 신상정보의 고지명령은 ①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고지대상자는 신상정보 최초 등록일부터 1개월 이내 ②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고지대상자는 출소 후 거주할 지역에 전입한 날부터 1개월 이내 ③ 고지대상자가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는 경우에는 변경정보 등록일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등록된 신상정보의 고지정보는 ① 고지대상자가 이미 거주하고 있거나 전입하는 경우에는 공개정보 즉, 성명, 나이, 주소 및 실제거주지,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사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요지이며, ② 고지대상자가 전출하는 경우에는 ①의 고지정보와 그 고지대상자의 전출 정보이다.

등록된 신상정보의 고지명령의 집행은 여성가족부장관이 하며, 이를 위하여 법원은 고지명령의 판결이 확정되면 판결문 등본을 지체 없이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달하도록 하고, 법무부장관은 고지대상자가 출소하는 경우 출소 1개월 전까지 ① 고지대상자의 출소 예정일과 ② 고지대상자의 출소 후 거주지 상세주소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여성가족부장관은 고지명령의 집행에 관한 업무 중 고지정보의 우편송부에 관한 업무를 고지대상자가 실제 거주하는 읍·면사무소의 장 또는 동 주민자치센터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위임을 받은 고지대상자가 거주하는 읍·면사무소의 장 또는 동 주민자치센터의 장은 ① 고지대상자의 출소 예정일과 ② 고지대상자의 출소 후 거주지 상세주소 및 고지명령에 따른 고지정보를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의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있는 가구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장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에게 우편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 제3절 재범방지를 위한 성범죄자 신고 포상금 제도

### 1. 성범죄자 포상금 제도와 대상 범죄 행위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매년 증가되고 더불어 갈수록 흉폭화되어 가고 있는 현 상황에서 사회적 약자인 아동과 청소년의 성을 보호하기 위해 2011년 9월 15일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2012년 3월 16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동 법률에서는 여자에 대해서만 인정되었던 강간죄의 대상을 남자 어린이와 청소년도 포함시키고 있으며, 더불어 성범죄 피해 아동·청소년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변호인 선임권을 보장하였다. 또한 수사절차에서의 보호조치 마련,<sup>19)</sup> 미성년자도 실명인증만 거치면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볼 수 있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였다.

그리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성범죄자 등을 수사기관에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자 하였다.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범죄행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 ②아동·청소년의 성을

19) 수사기관과 법원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수사하거나 심리·재판하는 경우에 성범죄 피해 아동·청소년의 인권과 특성을 배려하기 위한 것이다. 예를 들면, ①수사절차에서 피해자의 권리에 대한 고지 ②피해자에 대한 조사의 최소화 ③피해자와 가해자의 대질신문 최소화 ④긴급하지 않은 수사에서 피해자의 학습권 보장 ⑤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성범죄 수사 전문교육을 받은 인력이 피해자를 전담하여 조사 ⑥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2조, 제18조, 제27조 또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6에 따라 운영되는 피해자 지원기관 등과의 연락 및 협조 등이 있다.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 ③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 ④위계나 선불금(先拂金), 그 밖의 채무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을 곤경에 빠뜨려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 ⑤업무·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자신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것을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 ⑥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한 자 ⑦ 19세 이상의 사람이 장애 아동·청소년<sup>20)</sup>을 간음하거나 장애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간음하게 한 자 ⑧19세 이상의 사람이 장애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경우 또는 장애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추행하게 한 자 ⑨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 및 이런 일들이 범죄에 사용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한 자 ⑩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알선하는 업소에 아동·청소년을 고용하도록 한 자 ⑪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 또는 강요한 자 ⑫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 및 행위를 알선한 자, 그리고 영업으로 이러한 행위를 약속한 자 등이다.

## 2. 포상금의 지급 기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성범죄자 등을 수사기관에 신고, 고소·고발을 한 경우 이에 대한 포상금은 범죄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신

20)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13세 이상의 아동·청소년을 말한다.

고된 사람이 해당 범죄로 기소되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에 지급한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① 수사기관에 신고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신고한 경우, 예를 들면, 「유아교육법」상의 유치원, 「초·중등교육법」상의 학교, 「의료법」상의 의료기관 「아동복지법」상의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인복지시설, 「영유아보육법」상의 어린이집,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보호센터와 청소년재활센터, 「청소년복지지원법」상의 청소년쉼터, 「청소년활동진흥법」상의 청소년활동시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상의 학원 및 교습소,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피해자들을 위한 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등에 해당하는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는 직무상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②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대상 범죄행위의 실행과 관련된 사람이 신고, 고소, 고발하는 등의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③ 범죄의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 고발한 경우에도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 3. 포상금 지급 절차

포상금은 범죄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신고된 사람이 해당 범죄로 기소되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에 지급하는데, 이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포상금 지급 사유의 발생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리고 포상금을 지급할 때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 지급조서 및 지급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 4. 포상금의 지급액과 환수

포상금의 지급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100만원 이내로 하되, 그 세부적인 지급액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며, 신고자가 해당 범죄의 신고와 관련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보상금 또는 「청소년보호법」 제44조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① 지급받은 금액이 100만원의 포상금보다 큰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② 지급받은 금액이 100만원의 포상금보다 작은 경우에는 지급받은 금액을 빼고 지급한다.

여기에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한다라는 것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나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①폭행이나 협박으로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 ②위계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을 파는 사람을 곤경에 빠뜨려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 ③친족관계, 고용관계,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보호·감독하는 것을 이용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 ④위계 또는 위력으로 성교행위

등 음란한 내용을 표현하는 영상물 등을 촬영한 죄를 범한 사람을 신고, 고소, 고발한 경우에 포상금이 지급된다.

또한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한 사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나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위의 ①~④의 죄를 범하고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거나 이를 요구·약속한 사람, 그리고 위계 또는 위력으로 청소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죄를 범한 사람을 신고, 고소, 고발한 경우에도 포상금이 지급된다.

마지막으로 (a)업무관계, 고용관계,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게 마약 등을 사용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 (b)「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나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①다른 사람을 감금하거나 단체 또는 다중(多衆)의 위력을 보이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한 사람 ②성을 파는 행위를 하였거나 할 사람을 고용·관리하는 것을 이용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낙태하게 하거나 불임시술을 받게 한 사람 ③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의 죄를 범한 사람을 신고, 고소, 고발한 경우에도 포상금이 지급된다.

「청소년보호법」 제44조에 의하면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생각되는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고 있거나 청소년에게 유해한 업소에 청소년이 고용 또는 출입하고 있음을 발견한 때 및 기타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고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시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신고자에 대한 포상 등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성범죄자 등을 수사기관에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도 ①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②수사기관에 신고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신고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대상 범죄행위의 실행과 관련된 사람이 신고한 경우, 범죄의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 등의 사유가 확인된 경우 등에 해당할 때에는 그 포상금을 환수할 수 있다.

## 제4절 재범방지를 위한 성범죄자 전자발찌 제도

### 1. 최근 강간죄를 포함한 강력범죄 재범 현황

경찰청에서 발행한 「2011년 경찰백서」에 의한 범죄경력자인 재범자의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10년 총 검거된 인원은 1,986,319명으로 이중 범죄경력자인 재범자가 913,202명으로 범죄자의 45.9%가 재범자로 나타났다. 그리고 재범자들 중 같은 범죄를 반복해서 저지른 동종의 재범자는 482,792명으로 24.3%로 나타났으며, 다른 범죄를 반복해서 저지른 이종의 재범자는 430,410명으로 21.6%로 나타났다.

좀 더 구체적으로 형법범의 경우는 총 검거된 인원이 1,034,457명 중 재범자가 449,487명으로 43.4%를 차지하고, 특별법범은 총 검거된 인원이 951,862명 중 재범자가 463,715명으로 48.7%를 차지하고 있다.

「2010년 경찰백서」 통계에 의하면,<sup>21)</sup> 범죄자의 47.6%가 재범자로 나타났는데, 이에 비하면 다소 미비하지만 약간은 재범비율이 감소함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재범자중 동종 재범의 비율은 범죄자의 16.3%였지만, 「2011년 경찰백서」에 의하면 24.3%로 나타나고 있어 같은 범죄를

21) 「2010 경찰백서」에 의한 재범자 현황

(단위: 명)

반복해서 저지른 경우는 재범률이 높게 나타남을 보여주고 있다.

<표 1> 2011 경찰백서에 의한 재범자 현황 (단위 : 명)

구분	총검거인원	재범자		
		소계	동종재범	이종재범
계	1,986,319	913,202	482,792	430,410
형법범	1,034,457	449,487	241,454	208,033
특별법범	951,862	463,715	241,338	222,337

※ 총 검거인원은 법인 제외 수치임.

다음으로 중요범죄인 살인죄, 강도죄, 강간죄, 방화죄, 절도죄, 폭력죄에 대한 재범 현황을 살펴보면, 우선 총 검거 인원인 544,280명 중에서 재범자는 279,536명으로 중요 범죄에서의 재범률이 51.4%나 되었다.

「2010년 경찰백서」 통계의 53.3%보다는 다소 감소하였지만,<sup>22)</sup> 아직도 강력범죄의 재범률은 50%이상의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구분	총검거인원	재범자		
		소계	동종재범	이종재범
계	2,333,715	1,109,859	380,130	729,729
형법범	1,164,800	534,652	173,523	361,129
특별법범	1,168,915	575,207	206,607	368,600

22) 「2010 경찰백서」에 의한 재범자 현황 (단위: 명, %)

구분	계	살인	강도	강간	방화	절도	폭력
검거인원	597,788	1,515	8,553	<b>9,215</b>	1,676	126,084	450,745
재범자	318,467	947	5,538	<b>4,417</b>	1,101	63,045	243,419
구성비(%)	53.3%	62.5%	64.7%	<b>47.9%</b>	65.7%	50.0%	54.0%

<표 2> 2011 경찰백서에 의한 재범자 현황 (단위: 명, %)

구분	계	살인	강도	강간	방화	절도	폭력
검거인원	544,280	1,344	5,542	17,642	1,454	119,110	399,184
재범자	279,536	842	3,526	8,237	989	59,656	206,286
구성비(%)	51.4%	62.7%	63.6%	46.7%	68.0%	50.1%	51.7%

※ 재범자는 동종 및 이종 재범을 합한 수치임.

강간죄(46.7%) 외에는 모두 50% 이상을 차지하는 높은 재범률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살인죄의 경우 재범률이 62.7%, 강도죄 63.6%, 방화죄 68.0%, 절도죄 50.1%, 폭력죄 51.7%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살인죄, 강도죄, 방화죄의 경우 60%이상의 재범률로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및 재범 교화 프로그램의 구축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특히, 아동, 청소년, 여성을 대상으로 한 강간범죄의 경우 2010년(총 9,215명 검거) 대비 약 2배 증가한 17,642명을 검거하였는데, 강간범죄의 재범률도 50% 가까이 차지하고 있어, 성범죄자의 재범방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통계상으로 보여주고 있다.

## 2. 재범방지를 위한 전자발찌 제도

앞서 최근의 통계에서 보듯이 한번 범죄행위를 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 다시 범죄행위를 저지를 확률이 높다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성범죄자의 경우는 유난히 재범률이 높다. 따라서 재범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감시할 수 있다면, 재범률을 낮출 수 있고, 유사한 범죄가 일어났을 때 용의자로 의심되는 사람의 검거 및 신변확보가 신속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수사기관의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들 모두를 완벽히 감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러한 일환으로 우리나라에서는 2005년에 처음으로 특정 성범죄자에 대해 전자발찌 착용을 강제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었으며, 2008년 9월 1일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sup>23)</sup>이 제정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특정 성범죄자를 대상으로 이 ‘전자발찌(Ankle monitor)제도<sup>24)</sup>’가 시행되었다.

동 법률은 특정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에 대해서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일명 ‘전자발찌’)를 부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위치추적 전자장치란 전자파를 발신하고 추적하는 원리를 이용하여 위치를 확인하거나 이동경로를 탐지하는 일련의 기계적 설비를 말한다.<sup>25)</sup>

23) 2010. 4. 15 제10257호 일부개정 되어 동년 7. 16일부터 시행되었다.

24) 미국 하버드대의 랄프 스위츠 게벨(Ralph Kirkland Schwitzgebel)박사는 1964년 특정인을 감시할 수 있는 전자기기를 처음 고안하였지만, 당시에는 기술적인 문제로 실용화되지는 못했다. 이후 1984년, 미국 뉴멕시코 주(州)지방법원의 판사였던 잭 러브(Jack Love)가 실용적인 전자발찌를 고안해 특정 범죄 전과자들에게 착용하도록 했다. 이후부터 전자발찌는 본격적으로 활용되기 시작하였다. 전자발찌는 이용 형태에 따라 특정인의 집에 가택 감독장치를 설치, 전자발찌를 착용한 사람이 일정 범위 이상의 거리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목적으로 쓰이기도 하며, GPS(위성항법장치)와 이동통신망을 이용해 전자발찌를 착용한 사람의 현재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활용된다. 전자발찌를 착용한 사람이 감시 범위를 이탈하거나, 전자발찌를 고의로 파손하거나, 접근금지 구역에 가거나, 배터리가 소모된 채로 방치하는 등이 감지되면 즉시 감시 기관에 보고된다.

25) 범죄자의 감시 목적으로 사용되는 전자발찌는 부착장치와 재택 감독장치, GPS가 내장된 위치추적장치로 구성되어 있다. 전자발찌 착용자는 항상 위치추적장치를 휴대해야 하며, 발목의 부착장치에서 발신되는 전자파를 위치추적장치가 지속적으로 감지하여 이를 이동통신망을 통해 재택감독장치로 데이터를 전송한다. 이렇게 하면 중앙관제센터에서 전자발찌 착용자의 신원 및 현재 위치, 그리고 현재 부착장치 및 위치추적장치를 휴대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위성 신호를 수신할 수 없는 장소에서도 대상을 효과적으로 감시하기 위해 지하철 내부 등에도 GPS 장비를 설치해 외부 신호를 수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전자발찌를 장착한 감시 대상자는 외출 시에도 항상 위치추적장치를 휴대해야 한다. 만약 위치추적장치에서 일정거리(약 1미터) 이상 떨어지거나 발찌를 절단하면 경보음이 발생, 이동통신망을 통해 이 사실이 관제센터에 전달된다. 그리고 해당 감시 대상자를 감독하던 보호관찰소나 보호관찰관에게도 문자 메시지가 전송, 감시 대상자의 신변을 확보하기 위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에 의한 전자감시제도는 성범죄자의 재범을 막아야 한다는 형사정책(刑事政策)적 요구와 교정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절감(費用節減)의 현실적 필요성에 따라 현대 과학을 감시·감독 체계에 응용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이다. 또한 성범죄자 뿐만 아니라 미성년자 유괴범죄와 살인죄 등의 특정범죄자의 재범 방지와 성행(性行) 교정을 통한 재사회화(再社會化)를 위하여 그의 행적을 추적하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하게 하는 부가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특정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을 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여기서 특정범죄라 함은 성폭력범죄, 미성년자 유괴범죄와 살인죄를 말한다.<sup>26)</sup>

2010년 4월 15일 개정된 동법에서는 법정형(法定刑)의 상한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인 특정범죄의 경우에는 전자발찌 부착기간을 최장 30년까지 연장하고, 동법 시행 전에 형이 선고된 성폭력범에 대해서도 전자발찌를 소급하여 부착할 수 있도록 하며,<sup>27)</sup> 성폭력범죄 외에 살인범죄도 전자발찌 부착 대상에 포함시켰다.

동법의 주요 개정 사항은 다음과 아래와 같다.<sup>28)</sup>

과거의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소급 적용으로 2008년 9월 1일 이전에 이미 성폭력 범죄사건의 제1심 판결을 선고받아 개정법 시행 당시 징역형 이상의 형, 치료감호(治療監護), 보호감호(保護監護) 집행 중인 자와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26) 2011년 법무부는 전자발찌 부착대상을 강도범에게 확대하는 내용의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전자발찌법)'의 개정을 위한 내부 논의를 시작하였는데, 법무부의 통계에 의하면, 강도범의 재범률은 27.4%로 성폭력(14.8%)이나 살인(10.2%)에 비해 높을 뿐만 아니라 계획적 범행인 경우가 많고 살인이나 강간 등의 강력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매우 높은 범죄이기 때문에 전자발찌 부착을 통해 재범위험성을 낮출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법률신문, 「전자발찌 강도범에도 부착」, 2011. 1. 24 일자.

27) 울산지방법원은 재범 위험성이 높은 성범죄 전과자(2명)에 대해 전자발찌를 각각 7년과 3년간 차고 다니도록 명령했다. 이는 2010년 7월 개정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법이 2008년 9월 전자발찌법 시행 전의 성범죄자에게도 전자발찌 부착을 소급, 확대한 데 따른 것이다. 연합뉴스, 「울산서 성범죄자에 전자발찌 부착..첫 소급명령」, 2011. 1. 24 일자.

28) 법무부, 「전자발찌 최장 30년까지 채운다 - 형 확정된 성폭력범에게 소급적용, 살인범도 부착가능」, 2010년 3월 31일, 보도자료 참고.

징역형 등의 집행 종료, 가출소(假出所), 가종료, 가석방 또는 면제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중 2회 이상의 실형 선고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고 재범위험성이 있는 자에 대해 검사의 청구와 법원의 결정으로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였다.<sup>29)30)</sup>

동법 제5조는 성폭력범죄에 대한 부착명령의 청구요건을 완화하였다. 개정법에서는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자가 집행 종료 또는 집행이 면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때”에 재범위험성이 인정되는 경우로 부착명령의 청구요건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렸다. 또한 같은 취지로 “13세 미만의 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를 “16세 미만의 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로 확대하였다.

그리고 전자발찌 부착대상 범죄에 살인죄를 추가하였다. 살인범죄는 국민의 안전을 크게 위협하는 흉악범죄로 재범률이 높고, 이들의 재범을 막기 위해 현행 성폭력 범죄와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외에 살인죄를 추가하였다.

최근 4년간 살인범죄 전과자의 동종재범 건수 등을 분석한 결과 살인범죄자 중 연간 약 500명이 전자발찌를 부착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징역형 종료 후 및 집행유예 대상자 61명, 가석방자 393명, 보호감호 가출소 및 치료감호 가종료 대상자 45명 등 총 499명).

또한 동법 제9조에서는 전자발찌의 부착기간을 상향 조정하였는데, 고

29) 법무부는 전자발찌 제도가 시행된 이후 전자발찌를 부착한 누적 인원은 2010. 10. 30 기준으로 818명(성폭력범 713명, 살인범 105명)으로 이 가운데 동종 범죄 재범자가 단 1명에 불과할 정도로 탁월한 재범 억제 효과가 있었다고 발표하였다.

30) 소급적용 절차

- 성폭력범죄로 현재 징역형 등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집행 종료 3개월 전까지 검사가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 법원은 집행 종료 1개월 전까지 부착명령을 결정
- 이미 출소하였거나 개정법률 시행 당시 징역형 등의 집행 종료일이 6개월 미만 남은 사람에 대해서는 개정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검사가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 법원은 청구일부터 2개월 이내에 부착명령을 결정

연령자(高年齡者)의 중범죄 사건이 증가하고, 평균수명이 연장됨에 따라 사회보호에 미흡한 측면이 있어 법정형의 상한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인 특정범죄의 경우에는 전자발찌의 부착기간을 최장 30년으로 상향조정하였다. 부착기간 상향조정과 함께 합리적인 기간 결정을 위해 특정범죄의 법정형에 따라 부착기간을 달리 규정하고, 범죄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 부착기간의 하한을 2배로 상향조정하였다.<sup>31)</sup>

또 다른 개정내용은 보호관찰의 의무적 실시로 종전 법률은 형기종료 후 전자발찌 부착 시 보호관찰 실시규정이 없어, 전자발찌 부착자의 이동경로 확인만 가능할 뿐, 현장방문 지도 및 조사, 경고 등 밀착감독이 곤란하여 범죄자의 재범방지에 한계가 있어, 부착기간 동안 피부착자는 의무적으로 보호관찰을 받도록 하였다.

더불어 동법 제9조의 2에서는 피부착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추가하였는데, 피부착자의 주거지가 없거나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범위험성이 높으므로 법원이 피부착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 준수사항에 “주거지역 제한”을 추가하였다.

동법 제14조 제2항에서는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특정범죄사건에 대한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가석방되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서면으로 신고할 의무를 부여하였

31) 제9조 (부착명령의 판결 등) ① 법원은 부착명령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의 범위 내에서 부착기간을 정하여 판결로 부착명령을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특정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부착기간 하한을 다음 각 호에 따른 부착기간 하한의 2배로 한다. 1. 법정형의 상한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인 특정범죄: 10년 이상 30년 이하 2. 법정형 중 징역형의 하한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인 특정범죄(제1호에 해당하는 특정범죄는 제외한다): 3년 이상 20년 이하 3. 법정형 중 징역형의 하한이 3년 미만의 유기징역인 특정범죄(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특정범죄는 제외한다): 1년 이상 10년 이하 ② 여러 개의 특정범죄에 대하여 동시에 부착명령을 선고할 때에는 법정형이 가장 중한 죄의 부착기간 상한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의 부착기간의 상한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하나의 행위가 여러 특정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죄의 부착기간을 부착기간으로 한다. ③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받는다.

고, 위치추적 회피 목적의 주거 이전이나 출국을 방지하기 위해 주거 이전이나 7일 이상의 국내 여행 또는 출국할 때에는 반드시 보호관찰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였다.

그리고 동법 제14조의 2에서는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한 부작기간 연장 등을 규정하였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법상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주거이전, 7일 이상의 국내여행 또는 출국을 하거나 거짓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법원의 결정으로 1년의 범위에서 부작기간을 연장하거나 준수사항의 추가 또는 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동법 제23조에서는 보호감호 가출소자에 대한 전자발찌 부착규정을 신설하였는데, 피보호감호자의 재범위험성이나 범죄의 중대성이 피치료 감호자만큼 높으므로 보호감호소에서 가출소하는 경우에게도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sup>32)</sup>

성범죄자의 재범방지를 위한 전자발찌제도에 대하여는 아직도 인권 침해라는 지적도 없지 않으며, 범죄 예방 외에 어린이나 정신지체장애인, 혹은 독거노인의 돌발행동이나 행방불명을 방지하기 위해 전자발찌가 활용되는 경우도 있어 전자발찌의 활용 폭을 어느 선까지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32) 피보호감호자 및 보호감호 대기자 현황

(2010. 3. 기준)

구 분	피보호감호자(청송 제3교도소)	보호감호 대기자
성폭력 범죄	34	42
살 인	0	11
계	34	53

## 제3장 외국의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

### 제1절 미국

#### 1. 성범죄자 석방 공고법 (Megan's Law)

우리의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는 사회적, 법적으로 많은 문제가 제기된 끝에 결국 시행이 되었다. 성범죄의 피해자가 성장기의 아동인 경우에는 심각한 육체적 손상을 주며, 또한 정신적으로도 트라우마를 주어 아동 성장발달에 커다란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다.<sup>33)</sup>

미국의 경우에도 많은 아동 및 청소년들이 성범죄자에 의해 희생된 후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가 정착이 되었는데,<sup>34)</sup> 특히 1994년 7월 29일 뉴저지(New Jersey)주에 살았던 7세 소녀 메건 니콜 칸카(Megan Nicole Kanka)가 이웃에 사는 소아 성도착증을 갖고 있는 상습 성범죄자인 제시 티멘데카스(Jesse Timmendequas)에게 강간을 당한 후 살해된 사건으로 가해자는 이미 1981년에 5세 아이에게 상해를 가하고 또 다른 7세 아이에 대한 성폭행 미수 혐의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바 있는 전과 2범이었다. 메건의 부모는 만약 이웃에 성범죄 전과자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33) 스위스에서는 아동성폭행범에게 무조건 종신형을 선고하도록 하자는 성폭행 피해 아동 어머니의 청원이 10만명의 서명을 받아 국민투표에 붙여진 끝에 54%의 지지를 얻어 입법화하게 되었다. Geneva(Reuters), Swiss will jail for life incurable criminals, February 09, 2004; 표창원, 아동성폭력 재범방지정책들에 대한 검토, 국가인원위원회, 2010. 7. 14면.

34) 2007년부터 미국 포트워스 시(市)경찰은 성매수 등 성매매 관련 범죄 전과자들의 재범방지를 위해 지역 케이블 방송 TV에 이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이른바 '존(John) TV(존은 성매수 남성을 지칭하는 속어)' 90일간 공개하고 있다. 공개대상 정보는 사진, 성명, 생년월일, 죄명, 체포일자이며 공개기간 및 방영횟수는 90일간 주당 16회이다. 미 포트워스 시청, 성매수자 신상 TV 공개, 경찰청 자료.

알았더라면 자신의 딸이 강간·살해 당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성범죄 전과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는 법률의 제정을 촉구하였다.<sup>35)</sup>

이를 계기로 메건의 이름을 따서 「메건법(Megan's Law)」이 1994에 제정되었다. 이 메건법은 1996년 5월 연방 법률로 제정된 이후에 미국 전 주(州)에 적용되고 있는 제도로 성범죄와 관련하여 기소된 적이 있는 상습 강간범과 성폭행범, 성도착자 등에 대해 10년간 주소지를 주(州)당국에 등록하고 주민들이 전화와 인터넷을 통해 누구나 성범죄자의 정보를 열람할 수 있고, 성범죄자 명단을 제공받을 수 있게 하는 법률이다. 또한 성범죄자는 아동의 집으로부터 10km 이내의 접근이 금지된다. 또한 이사를 할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한다. 물론 각 주마다 내용상 다소 차이가 있으나, 주로 ‘성범죄자의 등록제도’와 우리의 신상공개 제도에 해당하는 ‘지역사회에의 통지제도’를 골자로 하여 만들어진 일련의 법률들을 가리킨다.<sup>36)</sup>

대부분의 주(州)에서는 성범죄자의 인터넷 공개를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공개의 범위인데, 전형적인 것은 성명, 사진, 신체특징, 생년월일 그리고 대상자의 현재 주소 등을 탑재하는 것이지만, 약간의 주(州)에서는 주소를 대신하여 우편번호(zip code)만을 기재하기도 한다. 일부 주

35) 1994년 뉴저지 주의회는 성범죄자들이 강제적 등록제도와 통지제도를 입법화(Sex Offender Registration and Notification Law)하였다. 뉴저지 주의 메건법 제정 이전인 1990년대에 워싱턴 주의회는 등록과 통지를 결합한 「지역사회보호법(The Community Protection Act)」을 제정하였는데, 이 법은 일부 성범죄자들을 성적으로 폭력적인 범법자(Sexually Violent Predators)로 구분하여 출소 후에도 민간치료 시설에 수용될 수 있도록 별도 관리하였다. 워싱턴 주가 등록과 통지를 결합한 법률을 제정한 최초의 주이기도 하나, 통지를 결합하지 않은 성범죄자 등록제도는 그 보다 훨씬 이전인 1947년 캘리포니아주에서 제정되었고, 1950년대와 1960년대에는 애리조나, 플로리다, 네바다, 오하이오, 앨라바마 주에서도 성범죄자 등록제도가 소개되었다. Laura A. Ahearn, "Megan's Law Nationwide and The Apple of My Eye Childhood Sexual Abuse Prevention Program", Prevention press USA, 2001, p.16; Elizabeth A. Pearson, "Status and latest development in sex offender registration and notification law", Bureau of Justice Statistics, National Conference on Sex Registries, April 1998, pp.45-49; 정현미·윤지영, 앞의 논문, 184면.

36) 현재 2003.06.26, 2002헌가14, 판례집 제15권 1집, 654면.

에서는 추가로 대상자를 고용한 사람, 대상자가 운전하는 자동차의 제조 회사, 모델명, 차량등록번호 등을 게시하기도 한다.<sup>37)</sup>

위 법률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등록·공개함으로써 성범죄로부터의 아동, 청소년 및 여성들의 안전보장과 지역사회의 보호에 주안을 두고 있다. 즉 상습적이고 돌발적인 성범죄자들이 아무런 경고없이 지역사회로 들어오는 것은 일반대중의 안전보장을 어렵게 한다는 현실과 교정당국이 그들의 정신적 교화나 교정을 위한 치료를 강제할 수 없다는 현실적인 고려가 법 시행의 근거가 된 것이다.<sup>38)</sup>

메건법의 특징적인 입법조치들로는 성범죄자 신상정보의 등록과 공개 제도인데, 이는 해당 범죄자들의 신상정보를 경찰 등 수사기관 및 형사사법기관에 등록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이는 다시 일반 시민에게 공개하지 하는 형태(Registration Statutes)와 신상정보 등록과 더불어 일정 범위는 일반 시민에게 공개하는 형태(Notification Statutes)으로 구분된다.<sup>39)</sup> 또 다른 특징으로는 성범죄자들에 대한 강력한 법정형, 성폭력 사범에 대한 민사책임 등을 들 수 있는데, 이 중 지역사회에 대한 통지 시스템은 성범죄자에 대한 공중의 인식증진을 목적으로 등록된 성범죄자의 정보를 일정 범위의 사람들에게 배포하거나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것을 의미한다.<sup>40)</sup>

메건법의 입법화는 미국 역사상 최초로 아동성폭력 문제를 공론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메건법에 따른 성범죄자 관련 통지가 실행되면서 많은 지역사회들은 전통적으로 비밀스럽게만 취급되던 이 문제를 좀 더 정면에서 다루고 공개적으로 토론하게 되었다. 반면에 이 제도는 현대판 '

37) Human Rights Watch, No Easy Answers: Sex Offender Laws in the US, 2007, p.54.

38) 정현미·윤지영, 앞의 논문, 184면.

39) Menendez Bernard, "The Constitutional Implication of Megan's Law: Permissible Regulation or Unconstitutional Intrusions?", 24 New England Journal on Criminal and Civil Confinement 1, Winter 1998, p.251; 정현미·윤지영, 앞의 논문, 185면.

40) <http://www.lapdonline.org/>, America LAPD homepage(2012. 5. 30 방문).

주홍글씨' 제도라는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하였다.

## 2. 연방정부의 성범죄자 등록 시스템

미국은 성범죄자에 대한 단일화된 연방등록시스템이 도입되기 이전에는 21개의 주에서 개별적으로 성범죄자 등록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었는데, 1994년 50개 주 모두에 성범죄 등록을 공히 의무화한 제이콥 웨터링법(Jacob Wetterling Act)이 채택되면서 연방 차원에서의 등록규정이 마련되었다. 이 제이콥 웨터링법은 1994년 9월 성범죄자 등록제도에 관한 첫 번째 연방입법인 「아동범죄 및 성폭력범죄자 등록에 관한 제이콥 웨터링법(Wetterling Crimes Against Children and Sexually Violent Offender Registration Act)」이 제정되었다. 주정부가 아동학대 및 기타 성폭력 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한 효과적인 등록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동법이 「연방폭력범죄 억제 및 그 집행에 관한 법(The Federal Violent Crime Control and Law Enforcement Act of 1994)」에 포함되면서 보다 광범위한 등록의무가 미국 전역에 전국적으로 시행되었다. 이후 1996년의 메간법, 성범죄자 추적 및 신원확인에 관한 팜 라이크너법(Pam Lychner Sex Offender Tracking and Identification Act)<sup>41)</sup>이 차례로 제정되면서 미국의 성범죄자 관련 연방입법이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1997. 7. 메간법이 시행된 이후 미국 연방법무부는 웨터링법과 메간법

41) 1996년 제정된 Pam Lychner Sex Offender Tracking and Identification Act은 공공의 안전 강화를 위해 연방, 주 및 지방단위 정부에 대해 수많은 의무들을 부과하는데, 특히 성범죄프로그램의 운영에 있어서 연방수사국인 FBI의 권한과 등록프로그램의 내용을 강화하고 있다. Lisa Gursky Sorkim, "The Trilogy of Federal Statues", Bureau of Justice Statistics, National Conference on Sex Offender Registries, April 1998, pp. 16-18; 정현미·윤지영, 앞의 논문, 185면.

의 실행을 위하여 성범죄자 등록가이드라인을 공표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성범죄자가 출옥하거나 보호관찰 또는 가석방되는 경우, 보호관찰관 또는 가석방 담당관은 범죄자에게 주정부에 대한 등록의무를 고지하고 성범죄자로부터 등록정보를 획득하여 등록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최초의 등록정보가 획득되면, 그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주 등록기관 및 범죄자에 대한 관할권을 갖는 지역단위의 기관에게 동시에 정보를 제출하는 것을 허용한다.

둘째, 성범죄자가 주소를 변경했을 경우 등록의무자는 이사 후 10일 이내에 주정부의 등록기관에 이를 신고해야 하는데, 법이 정한 기간내에 등록의무자가 주소변경 정보를 중개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는 점과 중개기관이 즉시 획득한 주소정보를 지정된 주정부의 법집행기관에 전달하여야 한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셋째, 성폭력흉악범으로 분류되는 범죄자에게는 보다 광범위한 등록정보의 제공이 요구된다. 형을 선고한 법원은 범죄자가 성폭력흉악범인지의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그 결정시기에 대하여는 주정부가 재량권을 가지므로 그 결정은 형선고 시에 이루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감중이거나 석방될 무렵에도 가능하다.

넷째, 등록기간에 웨터링법은 석방된 범죄자가 적어도 10년간 등록 및 주기적인 주소확인에 따라야 할 것을 요구하는데, 성폭력흉악범의 경우에는 법원이 더 이상 그가 성폭력흉악범이 아니라는 판결을 해주지 않는 이상 평생동안 등록되어야 한다. 그러나 가이드라인은 범죄자의 등록의무가 그들의 사회복귀나 등록규정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판단하에 10년이라는 기간이 만료하지 않더라도 주정부가 이를 철회하거나 종결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다섯째, 웨터링법은 모든 범죄자에 대하여 지정된 주 기관이 1년에 한 번씩 주소를 확인할 것을 요구하는데, 성범죄자의 경우에는 90일마다 이를 행하여야 한다. 가이드라인은 최종 보고된 주소에서의 등록의무자의 거주여부가 등록기관에 바로 통지된다는 것이 입증되면 완화된 주기의 주소확인을 허용하고, 주소확인 양식을 우편으로 회신하는 대신에 등록의무자가 직접 지역단위의 법집행기관으로 출석하는 것도 허용한다.

마지막으로 주정부가 등록된 성범죄자의 정보를 지역사회에 통지하는 방법에 관하여도 규정하고 있는데, 주정부의 법집행기관은 담당 공무원이나 법원으로부터 등록의무자의 정보를 제공받는 즉시 이를 적절한 기록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하고, 등록의무자가 거주하게 될 곳의 지역단위의 법집행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sup>42)</sup>

## 제2절 영국

### 1. 성범죄자법(Sex Offender Act 1997)

영국은 종래부터 경찰이 범죄자의 정보를 파악하여 관리해 왔으나,<sup>43)</sup> 미국의 매건법에 영향을 받아 성범죄자로부터 미성년자 및 취약한 성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sup>44)</sup> 1997년 3월 21일 「성희롱보호법(Protection from Harassment Act 1997)», 「성범죄자법(Sex Offenders Act 1997)」, 「성범죄보호자료법(Sexual Offense Protected Material Act 1997)」을 제

42) 황승흠·황성기,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에 관한 연구, 청소년보호위원회, 201, 27-30면.

43) “The Sexual Offences Bill[HL]: Policy Background” Research paper 03/61. House of Commons(UK), July 10, 2003. p.20.

44) 영국의 성범죄자 등록 및 공개제도에 관해서는 Sentencing and Offences Unit, Home Office의 Sex Offenders Act 1997, Home Office Circular 39aus, 1997, 11. Aug, 1997 참조.

정하였다.

이 중 성범죄자법(Sex Offender Act)은 성범죄로 인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자 혹은 경고를 받은 자에게 주소 등을 경찰에 신고할 의무를 부과하고, 또한 성명과 주소 등을 변경한 경우에도 경찰에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성범죄자의 개인정보를 효과적으로 파악할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sup>45)</sup>

영국 내무성은 스스로 보호하지 못하는 아동 등을 성적인 범죄로부터 지키기 위해서는 1997년 성범죄자법의 신고의무 제도로는 불충분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이에 성범죄 전반에 관한 검토를 시작하였다.

성범죄자의 정보관리에 대한 개선이 가속화된 계기는 2000년 7월 발생한 8세 소녀 사라 페인(Sarah Payne)의 유괴살해 사건 후 전개된 가디언지의 캠페인 활동인데, 가디언지는 성범죄자 50명의 성명과 얼굴사진을 게재하고, ‘지명하여 모욕하자(Name and Shame)’는 캠페인을 벌이면서 아동에 대한 성범죄자의 장소를 아동을 가진 사람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하여 1997년의 성범죄자법의 개정(Sarah’s Law)을 정부에 요구하였다. 이러한 캠페인에 자극을 받은 시민들은 폭도로 돌변하여 지목받은 성범죄자의 집과 자동차 등을 파괴하는 사건이 영국 각지에서 발생하게 되었다. 그러나 영국 정부는 성범죄자의 성명, 주소에의 접근할 예정이 없으며, 현행 다기관 공중보호협정(MAPPA : Multi Agency Public Protection Arrangement)에 의해서만 정보가 제공된다는 입장을 밝혔다.<sup>46)</sup> 다기관 공중보호협정에 관하여는 뒤에 기술하기로 하겠다.

## 2. 성범죄법(Sexual Offences Act 2003)에 의한 성범죄자 정보 공개

45) 박병식, 앞의 논문, 77면.

46) 박병식, 앞의 논문, 78면.

2003년에 제정된 성범죄법은 성범죄자에게 주소, 거소, 성명, 생년월일을 경찰서에 신고하고 갱신하게 함으로써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다. 신고 의무자는 성적 폭행 등의 성범죄자로 유죄판결을 받거나 성범죄자가 법률 위반을 인정하고 경찰에 의해 경고를 받은 자, 정신장애로 무죄가 되었거나 정신상의 무능력 상태로 행위를 한 자인데, 이들은 법원의 명령을 거치지 않아도 신고의무가 있다.

성범죄자의 등록의무 이행기간은 유죄선고 또는 위반행위예의 경고이로부터 3일이내에 지역 관할 경찰서에 신고 정보, 즉 성명, 생년월일, 주소, 거소 등을 신고하여야 하고, 최초 등록시에 경찰은 신원확인을 위하여 성범죄자로부터 지문을 채취하고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신고를 태만히 한 자는 6월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법정최고액을 넘지 않는 벌금에 처하며, 허위신고는 5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그러나 성범죄법(Sexual Offences Act 2003)은 경찰이 관리하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일반 국민에게 제공하는 규정은 없지만, 유치원, 스포츠 클럽 등의 아동 관련업무의 고용주가 신상정보를 요구할 경우에는 채용예정자의 범죄경력 신상정보를 경찰에 요청하여 제공받을 수 있다.<sup>47)</sup>

### 3. 다기관 공중보호 규정(MAPPA)

영국은 교도소에서 출소하여 재범방지 및 사회내에 있는 고위험범죄자의 관리를 위하여 MAPPA(Multi Agency Public Protection Arrangement) 체계를 활용, 경찰·교도소·보호관찰소가 참여하여 성범죄자를 비롯한

47) 박병식, 앞의 논문, 82면.

고위험범죄자들에 대한 적절한 위험관리전략을 세우고 집중적인 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MAPPA에 의하여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예외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MAPPA는 법적 기구(statutory body)는 아니고, 기관들이 법적 의무를 보다 잘 수행할 수 있게 하고 기관간의 협력을 통하여 공공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기구(mechanism)라고 할 수 있다. 경찰청장, 지방보호관찰위원회 및 교도행정관할 장관이 책임기관으로 지역 교육기관, 주택·건강·복지 담당부서와 밀접하게 협력하여 범죄방지, 특히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에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Criminal Justice and Courts’ Services Act 2000’에서는 성범죄자와 폭력범죄자들의 위험성을 평가하고 관리하기 위해 경찰과 보호관찰소, 교도소가 각 지역의 책임기관(Responsible Authority, RA)으로서 서로 공식적인 협정(Arrangement)을 맺고 협력하도록 하고 있다. 2003년에는 국무장관(Secretary of State)에 의해 MAPPA 가이드라인(MAPPA Guidance)이 만들어졌는데, 여기서는 MAPPA에 관한 보다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MAPPA에 참여하는 기관은 경찰, 보호관찰소, 교도소와 같은 형사사법기관이며 이들을 책임기관(Responsible Authority)이라 한다. 그리고 책임기관 외에 지역내의 각종 기관이 협력기관(Duty to Co-operate Agency, DTC)으로서 참여한다. 협력기관으로는 지역사회복지기관(Local Authority Social Care Service), 의료기관 및 정신보건기관(Primary Care Trust, other National Health Service Trusts and Strategic Health Authority), 직업훈련소(Jobcentre Plus), 등록된 임대주택기관(Registered Social Landlords), 지역주택기관(Local Housing Authority), 지역교육기관(Local Education Authority), 전자감시요원(Electronic

Monitoring Provider) 등이 있다.<sup>48)</sup>

MAPPA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는 성범죄자를 비롯한 고위험범죄자는 약 13,000명이며, 그 중 약 1,500명은 매우 위험한 고위험범죄자로 보고 있다. MAPPA에 의해 관리되는 범죄자는 위험성의 정도에 따라 3단계로 분류된다. 2005/2006년도 MAPPA 관리대상자 현황을 보면, 가장 위험성의 정도가 낮은 1단계의 경우 23,870명으로 71%를 차지하고 있고, 중간 수준인 2단계의 경우 12,505명으로 26%를 차지하고 있다. 가장 고위험 범죄자군인 3단계의 경우 1,278명으로 전체의 3%를 차지하고 있다.

대상자의 단계는 위험성의 정도에 의해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한다. 1단계 관리는 범죄자에 대한 관리 및 감독에 책임이 있는 기관(보호관찰소, 경찰 또는 청소년보호팀)이 범죄자관리를 맡는다. 2단계와 3단계에 속하게 되면 두 개이상의 기관에 의해 관리 및 감독을 받게 된다. 단계가 높을수록 기관간의 협력이 강화되고 보다 집중적인 관리가 이루어진다. MAPPA는 보호관찰관할구역마다 설치되어 있고 출소예정자에 대해서는 회의를 개최하여 위험성평가 및 위험관리의 방법과 처우계획을 협의한다. MAPPA에 의해 관리되는 모든 범죄자는 주의깊은 감독을 받으며 정기적 부정기적인 가정방문과 경찰이나 보호관찰소에 보고의무를 부과시키고 있다.

범죄자들은 야간통행금지나 특정장소에의 거주, 치료프로그램과 같은 특별한 조건이 주어질 수 있다. 위험한 성범죄자도 MAPPA의 대상자가 되는데, 이들은 밀착감시되고 특정장소(예컨대 학교)에의 출입금지, 적극적인 감독(active surveillance), 전자감독, 승인된 거주장소(Approved Premises)에의 거주 등의 조건을 부과하여 경찰과 보호관찰소에서 이들을 밀착 감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범죄자 정보공유를 위

48) 정진수, 「고위험범죄자 재범방지를 위한 기관간 연계방안 -통합적 범죄자 관리체계의 관점에서」, 국회 우범자관리제도 선진화방안 정책토론회, 2011. 2. 17, 106면.

하여 ViSOR(Violent and Sex Offenders Register)<sup>49)</sup>이라 부르는 데이터 베이스를 만들었는데, 이는 경찰, 교도소, 보호관찰소간에 고위험범죄자에 대한 정보의 흐름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정보공유의 과정에서 보안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정보 공유규칙이 만들어져 있다.<sup>50)</sup>

## 제3절 일본

### 1. 고바야시 가오루(小林薫) 사건

일본에서는 2005년 6월부터 「성범죄의 재발방지 조치」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는 13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폭력적 성범죄와 관련하여 교도소 출소일 및 거주예정지를 법무성이 경찰에 제공하고, 경찰청은 당해 범죄자를 「재범방지조치 대상자」로 등록하여 관할 경찰서가 소재를 확인하면서 범죄의 미연방지에 노력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는 입법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2004년 나라현에서 발생한 성범죄 전과자 고바야시 가오루<sup>51)</sup>에 의한 여아 유괴·살해사건을 계기로 취해

49) 아동 대상 성범죄 뿐만 아니라 폭력범죄 혹은 성범죄를 저지르고 '12개월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범죄자 및 비록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았지만, 경찰이 판단할 때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은 자는 반드시 경찰에 등록하고, 주소 등 인적사항 변경시마다 경찰에 이를 보고하도록 하는 「폭력범죄자 및 성범죄자 등록(Violent and Sex Offender Register; ViSOR)」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표창원, 아동성폭력 재범방지정책들에 대한 검토, 국가인권위원회, 2010. 7. 19-20면.

50) 정진수, 위의 글, 106-107면.

51) 고바야시 가오루는 1989년 8명의 어린이를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며, 주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저지르다가 2004년에 1명을 납치, 살해하였다. 1991년 10월에 다른 어린이에 대한 살인 미수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투옥되었다. 이후 1995년 11월 9일에 가석방되고 1996년 7월 23일에 공식 석방되었다. 이후 2000년 3월부터 7월까지 아사히 신문의 배달원으로 일하면서 이코마 시, 그리고 인접한 나라 시 도미오 정(富雄町)의 지리에 능통하게 되었다. Nara girl's murder spotlights sex-crime recidivism By MANABU SASAKI YOSHITAKA SUMIDA: The Asahi Shimbun (<http://www.asahi.com/english/nation/TKY200501050094.html> 2012. 6. 4 검색)

진 것이다.

사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고바야시가 마이니치 신문의 배달원으로 일하고 있던 때인 2004년 11월 17일, 하교 중이던 당시 7세의 초등학생인 아리아마 가에데(有山楓)를 납치했다.<sup>52)</sup> 공교롭게도 납치장소에서 멀지 않은 곳에 파출소가 있었다. 고바야시는 아리아마의 어머니에게 아리아마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납치했다고 사진을 첨부한 메일을 보냈다. 이어 고바야시는 아리아마를 살해하고 그 사체를 이코마 군 헤구리초(平郡町)에 유기했고, 아리아마의 사체는 그날 밤 발견되었다. 부검 결과 아리아마의 폐에는 물이 가득했고, 이 물이 깨끗했던 점으로 인해 욕조 등에 집어넣어 익사시킨 것으로 판명되었으며, 또한, 살해되기 전에 옷이 벗겨졌다가 살해된 후 옷이 다시 입혀진 것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아리아마의 손발에는 찰과상이 있었고, 이빨이 몇 개 뽑히고 없었다. 이들은 모두 살해 후 이뤄진 것으로 추정되었다.<sup>53)</sup>

유력한 단서는 아리아마의 옷에 붙어 있던 머리카락으로, B형 혈액형인 사람의 것과 AB형 혈액형인 사람의 것으로 각각 판명되었다. 그러던 중, 고바야시는 재차 아리아마의 어머니에게 아리아마의 동생을 납치하겠다는 협박 메일을 사진과 함께 첨부하여 보냈다.<sup>54)</sup> 그러나 고바야시는 두 번째 협박 메일로부터 약 보름 뒤인 12월 30일 납치·살해 혐의로 체포되었는데, 체포에 결정적인 증거가 된 것은 휴대전화 기지국에 남겨진 아리아마의 휴대전화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아리아마의 사진을 전송시킨 기록 때문이었다.

이어진 가택 수색에서 경찰은 고바야시의 자택에서 아동 포르노가 게재된 잡지와 비디오를 압수했고, 아리아마의 휴대전화와 책가방도 발견

52) <http://weekly.japantimes.co.jp/news/mn2005/man-held-in-nara-girls-slaying> (2012. 6. 4 검색).

53) <http://www.japantoday.com/>(2012. 6. 4 검색).

54) <http://www.japantimes.co.jp/text/mn20041231a1.html>(2012. 6. 4 검색).

되었다. 또, 2004년 6월에서 12월에 걸쳐 도난당한 상당량의 내의도 발견되었다.<sup>55)</sup>

2005년 1월 19일, 고바야시는 유괴·살인의 혐의로 정식으로 구속되었고, 이미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전과가 있었기에 미국의 메간법과 비슷한 법률의 제정을 요구하는 일본 국민들의 여론이 커졌다.<sup>56)</sup>

이후 2006년 9월 26일, 나라 지방법원은 고바야시에게 사형을 선고했고, 같은 날 변호인은 항소했으나 10월 10일, 고바야시 본인이 이를 취하였다. 고바야시의 새 변호인은 2007년 6월, 고바야시의 항소 취하는 변호인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무효로 해 줄것을 나라 지방법원에 요구했으나, 2008년 4월 21일, 나라 지방법원은 변호인의 유무와 관계없이 항소의 취하가 가능하다면서 변호인의 청구를 기각했다.<sup>57)</sup> 결국 2008년 5월 22일, 오사카 고등법원은 1심의 판결을 확정했고, 이어 7월 7일, 대법원도 1심의 판결을 확정하여 최종적으로 사형이 확정되었다.<sup>58)</sup>

이 사건을 계기로 일본은 성범죄자의 정보를 공유하자는 여론이 확산되었다. 그러나 경찰청과 법무성은 이에 대하여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였는데, 경찰청장관은 재범율이 높은 성범죄자의 출소 후 주거정보에 대해 “현재 경찰로서는 파악할 수 없으며, 적어도 경찰서 단위에서는

55) 女兒誘拐殺人の捜査終結 下着窃盗容疑で追送検 <http://www.47news.jp/CN/200502/CN2005022801002348.html> (2012. 6. 4 검색).

56) Arrest spurs debate on naming sex offenders <http://www.japantimes.co.jp/text/nm20050101a2.html> (2012. 6. 4 검색).

57) 本人の控訴取り下げ認める 女兒誘拐殺人で奈良地裁 (<http://www.47news.jp/CN/200804/CN2008042501001109.html>) (2012. 6. 5 검색); 「控訴取り下げ無効」請求を退ける 小1女兒誘拐殺人事件で奈良地裁, 2008. 4. 25 산케이 뉴스.

58) 控訴取り下げは有効=奈良小1女兒誘拐殺人-大阪高裁, 지지통신(2008. 5. 22); 奈良女兒誘拐殺人、小林死刑囚の特別抗告棄却 最高裁, 아사히 신문(2008. 7. 9일); 控訴取り下げは有効 女兒誘拐殺人の小林死刑囚, 47 News (2008. 7. 9).

성범죄자의 주거를 파악해 둘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반면, 수형자의 출소를 관할하는 법무성은 “본인의 개인 프라이버시 문제와 원활한 사회복귀에 지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 대단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하여 서로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였다.

그러나 국민들 사이에 우려가 높아지면서 법무성은 성범죄자가 출소하면 경찰이 일반에 공포하지 않겠다는 전제 하에 성범죄자 신상공개를 제공하기로 합의하였다.

## 2. 성범죄자의 신상 정보 공유

일본에서의 우범자 관리는 일본 경찰청과 법무성이 정보를 확실히 공유하고 있는데, 경찰청과 법무성은 재범의 방지를 위해 아동대상 폭력적 성(性)범죄 전과자, 소재가 불분명한 가석방자 및 보호관찰 집행유예자 등에 대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이 정보공유로 인하여 범죄자의 재범방지를 미연에 조치할 수 있으며, 그리고 동종(同種)의 범죄 사건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 이들의 구체적인 정보공유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대상의 폭력적인 성(性)범죄에 대한 출소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경찰에서는 2005. 6월부터 아동대상 폭력적 성범죄에 의해 형사시설에 복역한 자를 출소예정일, 출소 후의 귀주예정처 등의 출소정보에 대해 법무성으로부터 정보를 받고 있다. 이러한 출소정보 공유의 시작부터 2008년말까지 556명의 정보를 제공받았으며, 출소자의 갱생이나 사회복귀를 방해하지 않도록 배려하며 범죄의 예방이나 수사의 신속화 등에 활용하고 있다.

둘째, 흉악하고 강력한 중대 범죄 등에 관한 출소정보의 공유이다. 경

찰에서는 2005. 9월부터 흉악 중대범죄 특히, 강간, 강도 등의 흉악 중대범죄 및 연계가능성, 재범의 우려가 높은 침입강도, 약물범죄 등에 의한 교도소 복역 후 출소자에 또는 출소예정자의 입소죄명, 출소 연월일 등의 출소정보에 대해서 법무성으로부터 그 자료를 제공 받고 있다. 이러한 출소정보는 운용한 개시일로부터 2008년 말까지 약 92,000명의 정보를 제공 받았다. 현재 동종의 범죄가 발생하였을 경우 경찰은 신속히 피의자를 검거하고 색출하는데 중요하게 활용되고 있다.

셋째, 보호관찰 중 소재가 불명된 자와의 정보 공유이다. 이는 소재가 불명된 가석방자 및 보호관찰부 집행유예장에 대해서 2005. 12월부터 보호 관찰소로부터의 협력, 의뢰하여 경찰이 그 소재불명자 소재수사에 협력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소재불명자에 관한 정보를 경찰이 파악한 경우에 해당정보를 보호관찰소에 제공하기로 하였으며, 보호관찰제도의 적절한 운영에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공유를 통하여 2008년 말까지 경찰이 파악한 1,568건의 정보를 보호관찰소에 제공해 오고 있으며, 당해 정보를 바탕으로 보호관찰소에서 1,319명의 소재를 확인하였다.<sup>59)</sup>

일본의 성범죄자 관리에 있어 법적인 근거는 법무성에서 의뢰시 정보 공유만 하기 때문에 법적인 근거는 없으며, 출소 후 소재확인 은 대략 출소 예정일로부터 1주간 이내 행하고 있다.

성범죄자의 지속적인 소재의 확인은 적어도 1년에 2회 이상 실시하며, 특히, 복수의 성범죄 전력을 가진 자나 출소 후 아동대상에게 말을 걸거나 따라다니며 이상한 행동을 하는 자 등 특이한 재범방지 조치대상자에 대해 빈번히 소재를 확인하고 있다. 이러한 소재확인 은 원칙적으로 재범방지 담당관 또는 재범방지조치 실시 보조자가 스스로 실시하며, 표찰 등의 외형적인 상황으로부터 주거(住居)의 유무를 파악하는 방법에 의하여 행하여진다. 주거의 유무가 분명하지 않을 경우에는 적절한 시간을

59) 일본대사관, 「일본의 우범자관리실태 자료보고」, 동경주재관, 2010. 5. 17(www.mofat.go.kr/japan).

두고 다시 소재확인을 행하며 여러 번의 소재확인에 있어서도 주거가 확실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재불명자로서 조치를 한다. 이처럼 성범죄자의 재범 방지를 위하여 소재확인을 한 경우에 경찰서장은 그 상황에 대해서 개인자료에 기재하고 경찰본부장에게 보고를 하고 있다.<sup>60)</sup>

## 제4절 프랑스

프랑스는 재범방지를 위하여 상습성이 있는 성범죄자에 대하여 관리를 하고 있는데, 범죄자가 이미 성범죄와 관련하여 법원에서 형을 선고받았거나 혐의를 받은 자의 상습적인 성폭력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2005년부터 도입되었으며, ‘성범죄자 자동화된 사법적 국립전산시스템(FIJAISV; Fichier Judiciaire National Automatisé des auteurs d'infractions Sexuelles ou Violentes)’이라는 전산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2004. 3. 9일자로 법률 배르뱅 II(Loi Perben II)의 제 48조를 근거로 하여 시작되었다. 그러나 현재는 형사소송법 제706-53-1조 및 그 이하 제R53-8-1조 및 그 이하의 조에 의하여 규율되고 있다.<sup>61)</sup>

이 전산시스템으로 관리되는 대상 범죄로는 강간, 고문 또는 야만적 행위에 의한 미성년자 및 성년자의 살인, 강간, 성폭행, 미성년자에 대한 성매매 및 미성년자에게 성매매를 강요하여 시키는 행위이며, 또한 최소 5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검사 또는 법원이 관리대상으로 지목하는 경우에 관리된다.

그리고 이 전산시스템으로 관리되는 내용은 성별, 생년월일, 국적, 별

60) 일본대사관, 「일본의 우범자관리실태 자료보고」, 동경주재관, 2010. 5. 17([www.mofat.go.kr/japan](http://www.mofat.go.kr/japan)).

61) 주프랑스공화국대사관, 「프랑스 경찰의 우범자 관리실태 자료」, 경찰청 내부자료, 2010. 6. 4.

명, 일정한 경우에 가족사항, 주소지, 시스템에 등재되는 계기가 된 사법적 결정으로 그 내용은 범죄종류, 재판일자 및 종류, 과형, 재판당국, 사건 일시 및 장소이다.

이러한 성범죄자 전산시스템(FIJAISV)의 관리방법으로는 우선 이 전산시스템에 등재된 사람은 자신의 주소를 연 1회 또는 6월 1회 또는 심한 경우 매월 1회 관할 경찰서에 출석하여 신고해야하며, 이주를 할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신규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이주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만약 이를 태만히 할 경우에는 2년의 징역 및 3만 유로(한화 4천2백여만원 상당)의 벌금으로 처벌 받는다. 또한 상습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 성범죄자는 교도소 출감시부터 감시토록 하고 있다.

이 전산시스템(FIJAISV)을 열람 할 수 있는 권한 있는 기관으로는 사법당국, 특별 자격을 보유한 사법경찰관, 도지사 및 미성년자 관련 업무에 신규 채용과 관련하여 도지사를 통하여 시장과 지방의회 의장이 권한을 갖고 있다.<sup>62)</sup>

## 제4장 성범죄자 신상공개에 따른 법리 검토

### 제1절 신상공개의 법리적 검토

인터넷을 통한 성범죄자의 신상공개가 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다양한 비판을 받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2012년 5월 21일 아동 성폭력범에 대해 국내 최초로 ‘화학적 거세’ 명령까지 내려졌다. 한 예로 미국 오리건

62) 2008년 말까지 약 4만4천여명의 성범죄자가 등재되었다. 주프랑스공화국대사관, 「프랑스 경찰의 우범자 관리실태 자료」, 경찰청 내부자료, 2010. 6. 4.

주에서 2000년부터 2004년까지 가석방된 성폭력 범죄자의 재범률 분석 결과를 보면, 화학적 약물치료를 받은 사람의 재범률은 0%인 반면에 치료에 불응한 사람 중 재범률은 18.2%로 나타났다고 한다.

특히,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문제에 대하여 우리의 헌법재판소는 재판관들에 의하여 첨예하게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결정례<sup>63)</sup>에 대하여 재판관 4인의 합헌의견 즉, 이중처벌금지의 원칙과 비례성의 원칙, 평등의 원칙,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합헌의견<sup>64)</sup>과 재판관 5인의 위헌의견 즉,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인격권의 침해, 평등의 원칙을 침해했다는 위헌의견에 대하여 판결과 학자들의 견해를 중심으로 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 1. 긍정적인 측면에서의 법리적 검토

### 가.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인터넷을 통한 성범죄자의 신상공개가 청소년성보호법에 규정된 그간의 신상공개방식의 내용을 강화한 것이라면 신상공개방식과 관련하여 행해진 당시의 비판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인터넷을 통한 성범죄자의 신상공개제도에 대하여도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인터넷을 통한 성범죄자의 신상공개가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가이다.

성범죄자의 신상공개가 헌법 제13조 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중처벌에 위반되는가의 문제는 유죄판결이 확정된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를 대상으로 공개대상자를 결정하는 절차는 형벌을 과하는 절차가 아니기 때

63) 박선영, 「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있어서 세부정보공개제도(안)의 검토」, [신상공개제도 및 세부정보공개제도(안)에 대한 공청회] 국가인권위원회, 2004, 110-115면.

64) 2003. 6. 26 선고 2002 헌가 14 결정.

문에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본다. 즉 헌법 제13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이중처벌금지는 형벌만을 중복하여 과하는 것을 금지하는 원칙으로서 청소년성보호법 제20조의 신상공개는 형벌이 아니므로 범죄에 대해 유죄판결로 형벌을 확정하고 그 행위를 대상으로 재차 형벌이 아닌 신상공개를 부과한다고 하더라도 이중처벌금지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것이다.<sup>65)</sup>

청소년 성(性)매수자에 대한 신상공개를 규정한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제1호에 관하여,<sup>66)</sup> 헌법 제13조 제1항<sup>67)</sup>에서 말하는 ‘처벌’은 원칙적으로 범죄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 실행으로서의 과벌을 의미하는 것이고, 국가가 행하는 일체의 제재나 불이익처분을 모두 그 ‘처벌’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 즉 헌법재판소 판결에 의하면, 이 원칙은 한번 판결이 확정되면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국가형벌권의 기속원리로 헌법상 선언된 것으로서, 동일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국가가 형벌권을 거듭 행사할 수

65)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규정된 신상공개에 관하여 이렇게 이중처벌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입장은 먼저 헌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이 국가의 형벌권만을 기속하는 원리라고 이해하여 신상공개가 형벌이 아니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때 형벌이 아닌 이유는 신상공개가 형법상 형벌의 종류를 정하고 있는 형법 제41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라거나 혹은 그것이 청소년보호위원회라는 행정기관에 의하여 행해지므로 「보안처분」이기 때문에 형벌이 아니라고 한다. 김상겸, 청소년 성 보호와 신상공개제도, 토지공법연구, 2002, 182-186면 참조.

66)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범죄방지 제도) ①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도 문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의 성명, 연령, 직업 등의 신상과 범죄사실의 요지를 그 형이 확정된 후 이를 게재하여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죄를 범한 자가 청소년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상 등의 공개를 결정함에 있어서 공개대상자 및 대상 청소년의 연령, 범행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전력, 죄질, 공개대상자의 가족관계 및 대상 청소년에 대한 관계, 범행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공개대상자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부당한 인권침해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상공개는 제5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죄의 대상청소년과 피해 청소년의 신상은 공개할 수 없다. 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도문 게재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시기·기간·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7) 헌법 제13조 ①항은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고 하여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없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 특히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헌법 제13조 제1항에서 말하는 ‘처벌’은 원칙적으로 범죄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 실행으로서의 과벌을 의미하는 것이고, 국가가 행하는 일체의 제재나 불이익처분을 모두 그 ‘처벌’에 포함시킬 수는 없는 것이다.<sup>68)</sup>

법 제20조 제1항은 “청소년의 성(性)을 사는 행위 등의 범죄방지를 위한 계도”가 신상공개제도의 주된 목적임을 명시하고 있고, 이 제도가 당사자에게 일종의 수치심과 불명예를 줄 수 있다고 하여도, 이는 어디까지나 신상공개제도가 추구하는 입법목적에 부수적인 것이지 주된 것은 아니다.

또한 공개되는 신상과 범죄사실은 이미 공개된 재판에서 확정된 유죄판결의 일부로서, 개인의 신상 내지 사생활에 관한 새로운 내용이 아니고, 공익목적을 위하여 이를 공개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수치심 등이 발생된다고 하여 이것을 기존의 형벌 외에 또 다른 형벌로서 수치형이나 명예형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렇다면, 신상공개제도는 헌법 제13조의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하여 합헌 의견을 제시하였다.<sup>69)</sup>

참고로 미국 연방대법원은 알래스카주의 메간법이 성범죄자로 하여금 이미 유죄확정 되어 대중에게 개방된 판결자료 중 자신의 신상과 유죄판결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관할 당국에 등록하도록 하고(위반시 형사처벌), 그 자료를 당국이 인터넷에 공개한다고 되어 있어도 이를 수치형이나 명예형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sup>70)</sup>

68) 헌재 1994. 6. 30. 92헌바38, 판례집 6-1, 619, 627.

69) 헌재 2003.06.26, 2002헌가14, 판례집 제15권 1집, 624-625면.

70) 헌재 2003.06.26, 2002헌가14, 판례집 제15권 1집, 641-642면.

## 나. 비례성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은 비례성의 원칙이라고도 하는데,<sup>71)</sup> 즉, 기본권으로 보장되는 행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국가작용이 정당화되기 위하여 충족해야 할 요건을 말한다. 법치국가의 원리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개인의 영역에 개입하는 것을 최소한으로 요구하는데, 개인의 영역에 국가가 개입하기 위해서는 이를 정당화시킬 이유가 있어야 한다.<sup>72)</sup> 그리고 그 개입이 정당한지는 특정 국가작용이 그와 관련된 기본권과 어떤 목적과 정도로 관련을 맺고 있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구체적으로는 기본권으로 보장되는 행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국가작용이 정당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그 국가작용이 실제로 당초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지, 그 국가작용보다 기본권으로 보호되는 행위를 덜 제한하면서 같은 보장을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다른 제한 방법은 없는지, 그리고 국가작용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이 그 작용으로 잃게 되는 이익과 적절한 비례관계가 있는지, 적어도 그 제한작용으로 얻게 되는 이익이 그로 인하여 잃게 되는 이익보다 더 큰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sup>73)</sup>

성범죄자의 신상공개가 우리 헌법상 정당화되는지의 여부도 과잉금지의 원칙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특히, 이러한 신상공개제도는 우리 헌법 제17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인격권 등과 관련이 되어있다.

헌법 제10조 제1문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항이 보

71) Stern, Das Staatsrecht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Bd. I, 2 Aufl., München, 1984, S. 861.

72) 박병식, 앞의 논문, 145면.

73) Siehe dazu Jarass in: Jarass/Pieroth, GG, 4. Aufl., Rn. 83 ff.

호하는 인간의 존엄성으로부터 개인의 일반적 인격권이 보장된다.<sup>74)</sup> 또한 헌법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상공개제도는 국가가 개인의 신상에 관한 사항 및 청소년의 성매수 등에 관한 범죄의 내용을 대중에게 공개함으로써 개인의 일반적 인격권을 제한하며, 한편 사생활의 비밀에 해당하는 사항을 국가가 일방적으로 공개하는 것이므로, 이는 일반적 인격권과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신상공개제도는 범죄자 본인을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현존하는 성폭력범죄의 위협으로부터 사회 공동체를 지키려는 인식을 제고함과 동시에 일반인들이 청소년 성매수 등 범죄의 충동으로부터 자신을 제어하도록 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이다. 이를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청소년의 성보호’라는 목적은 우리 사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공익의 하나라고 할 것이다.

이에 비하여 청소년 성매수자의 일반적 인격권과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가 제한되는 정도를 살펴보면, 법 제20조 제2항은 “성명, 연령, 직업 등의 신상과 범죄사실의 요지”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이미 공개된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된 형사판결이라는 공적 기록의 내용 중 일부를 국가가 공익 목적으로 공개하는 것으로 공개된 형사재판에서 밝혀진 범죄인들의 신상과 전과를 일반인이 알게 된다고 하여 그들의 인격권 내지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신상과 범죄사실이 공개되는 범죄인들은 이미 국가의 형벌권 행사로 인하여 해당 기본권의 제한 여지를 일반인보다는 더 넓게 받고 있다. 청소년 성매수 범죄자들이 자신의 신상과 범죄사실이 공개됨으로써

74) 헌재 1990. 9. 10. 89헌마82, 판례집 2, 306, 310 ; 1991. 9. 16. 89헌마165, 판례집 3, 518, 526-527.

수치심을 느끼고 명예가 훼손된다고 하더라도 그 보장 정도에 있어서 일반인과는 차이를 둘 수밖에 없어 그들의 인격권과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도 그것이 본질적인 부분이 아닌 한 넓게 제한될 여지가 있다.

그렇다면 청소년 성매수자의 일반적 인격권과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가 제한되는 정도가 청소년 정보보호라는 공익적 요청에 비해 크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결국 법 제20조 제2항 제1호의 신상공개는 해당 범죄인들의 일반적 인격권,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를 과잉금지의 원칙<sup>75)</sup>에 위배하여 침해한 것이라 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sup>76)</sup>

#### 다. 평등의 원칙

헌법 제11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평등의 원칙은 개개인에게 평등한 대우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을 하나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헌법원칙으로서 국가에게 모든 영역에서 평등하게 대우해 줄 것을 요구하기도 한다. 헌법 제11조에서 말하는 평등이란 일체의 차별적 대우를 부인하는 절대적인 평등이 아니고 법의 적용이나 입법에 있어서 불합리한 조건에 의한 차별을 하여서는 안되는 상대적인 평등을 의미한다.<sup>77)</sup>

신상공개 대상이 되는 성범죄보다 불법성이 더 크다고도 할 수 있는

75) 과잉금지의 원칙은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입법활동을 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기본원칙 내지 입법활동의 한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려는 입법의 목적이 헌법 및 법률의 체제상 그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하고(목적의 정당성), 그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그 수단이 효과적이고 적절하여야 하며(수단의 적합성), 입법권자가 선택한 기본권 제한의 조치가 입법목적달성을 위하여 설사 적절하다 할지라도 보다 완화된 형태나 수단을 모색함으로써 기본권의 제한은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치도록 하여야 하며(피해의 최소화), 그 입법에 의하여 보호하려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을 비교衡量할 때 보호되는 공익이 더 커야 한다(법익의 균형성)는 헌법상의 원칙이다(헌재 1990. 9. 3. 89헌가95, 판례집 2, 245, 260 참조).

76) 헌재 2003.06.26. 2002헌가14, 판례집 제15권 1집, 625면.

77) 헌재 1999.07.22. 1998헌바14; 2003.12.18. 2001헌바91(병합); 2002.12.18. 2001헌마546 결정 참조.

청소년 대상 일반 범죄들, 예컨대 미성년자 살해행위, 미성년자 약취유인행위 등의 범죄자의 신상은 공개하지 않고, 법상의 청소년 대상 성범죄 가운데에서도 청소년 성매수의 장소제공 또는 알선한 자 등 일련의 행위의 범죄자의 신상은 공개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평등원칙 위배여부가 문제된다.

신상공개가 되는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규정한 법률조항의 의미와 목적은 성인이 대가관계를 이용하여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는 등의 행위로 인하여 야기되는 피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려는데 있는 것이고, 이에 비추어 볼 때 청소년 대상 성범죄와 그 밖의 일반 범죄는 서로 비교집단을 이루는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 이라고 단언하기는 어려우며, 나아가 그러한 구분기준이 특별히 자의적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또한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가운데 공개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그 행위의 대상이나 형태에 있어서 청소년 성매수 행위의 공범적 성격의 것들로서 행위불법성의 차이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중 일부 범죄자의 신상이 공개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러한 차별입법이 자의적인 것이라거나 합리성이 없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신상공개제도로 인하여 기본권 제한상의 차별을 초래하나, 그 입법목적과 이를 달성하려는 수단간에 비례성을 벗어난 차별이라고 보기 어렵고<sup>78)</sup>, 달리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sup>79)</sup>

78) 오늘날 성매매 등 아동에 대한 성착취 문제는 전세계의 관심사가 되고 있고 여러나라에서 신상공개제도와 유사한 새로운 입법수단을 마련하고 있는바, 1989년 유엔 ‘아동권리조약(Convention on the Right of the Child)’ 은 조약체결국이 아동을 성매매나 기타 성적 착취행위로부터 보호할 의무를 규정한 바 있고(제34조), 한편 1996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개최된 ‘상업적 성착취에 대항하는 제1차 세계 대회’ 에서는 참가국들이 상업적 성착취의 희생자가 되는 아동의 수를 감소시키는 등의 조치를 향후 5년 이내에 개발할 것을 선언하였다. 미국의 경우 성범죄자들로 하여금 직접 관할 당국에 주기적으로 자신의 성명, 주소, 직장, 유죄판결 내용을 등록하게 하며 등록자들은 사진과 지문까지 찍고 그러한 내용들은 인터넷에 공개되고(알래스카주의 경우), 대만의 경우에도 아동및소년성교역방제조례(兒童及少年性交易防制條例, 2000. 11. 8. 수정 공포된 것)에 의하면, 18세 이상의 자가 대가를 받고 아동(12세 미만자)이나 소년(18세 미만자)과 성교 혹은 외설행위, 그 밖에 동법상 아동이나 소년의 성(性)에 관련된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는 형사판결 확정 후 주관기관이 범죄자의 이름과 사진 그리고 판결

## 라. 적법절차의 원칙

우리 헌법 제12조 제1항은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소년 성보호법 제20조 제3항은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신상 등의 공개를 결정함에는 범행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고, 제5항은 구체적인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하위 법규에서는 이러한 법의 취지에 따라 신상공개 대상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기회를 주도록 하고,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을 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의견진술을 한 자에 대하여는 재심의를 하여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최소한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갖춘 기관이고, 신상공개결정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을 통해 그 적법 여부를 다툴 기회가 보장되고 있으며, 이미 법관에 의한 재판을 거쳐 형이 확정된 이후에 신상공개가 결정된다.

그렇다면 법 제20조 제2항 제1호의 신상공개제도는 법률이 정한 형식적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며 그 절차의 내용도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춘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절차적 적법절차원칙에 위반되는 것이라 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sup>80)</sup>

요지를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34조).

79) 헌재 2003.06.26, 2002헌가14, 판례집 제15권 1집, 625-626면.

80) 헌재 2003.06.26, 2002헌가14, 판례집 제15권 1집, 626-627면.

## 2. 부정적인 측면에서의 법리적 검토

### 가.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신상공개가 이중처벌에 해당한다는 견해로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가 ‘비록 형법전에는 명예형이라는 죄목이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비교헌법학적 또는 법사회학적 측면에서 보면 수치심을 유발하고 명예를 실추시키는 신상공개제도가 우리나라에서는 실질적으로 명예형으로 기능할 뿐 아니라, 현실적으로 형벌의 기능과 속성을 지니므로 이는 형사제재의 일종인 처벌에 해당한다’<sup>81)</sup>고 주장하고 있다.

이것을 ‘일단 청소년 성범죄로 확정판결을 받고 난 다음 전혀 추가로 요구되는 행위요건이나 사실관계가 없이 바로 신상이 공개된다는 점에서 이는 명백히 이중처벌에 해당한다거나,<sup>82)</sup> 혹은 하나의 행위가 형벌인지 아닌지는 그것이 범죄행위를 전제로 그에 대한 제재적 효과로서 부과되는지의 여부, 부과되는 법적 효과의 내용과 정도 등을 고려하여 판별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신상공개제도는 공개범위가 무차별, 무제한적이어서 대상자에 대한 프라이버시의 중대한 제한이 될 수 있다.

또한 그 제한의 정도가 지나치게 과도할 수 있다는 점, 미국과 다르게 지역사회에 대한 성범죄의 예방적 효과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 범죄자의 신상자료를 공개함으로써 일종의 사회적 응징을 유도한다는 성격이 보다 강하고 일정한 제재 효과와 함께 사회일반의 비난을 유도하여 마치 고대

81) 박선영, 신상공개제도 합헌결정에 대한 비판적 검토, 헌법학 연구 제9권 제4호, 2003, 148면.

82) 박선영, 위의 논문, 154-155면.

사회의 추방이나 명예형의 한 형태로서 치욕을 부과하여 제재적 기능을 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단순한 행정처분이나 보안처분의 성격을 가지 못하고 오히려 형벌의 성격이 보다 강화된 보안처분과의 혼합적 성격을 갖는 범죄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법적 제재<sup>83)</sup>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신상공개제도는 사실상 형벌적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헌법 및 기타 하위법이 규정하는 형사입법의 체계적 정형성을 무너뜨린 형벌의 일종으로 파악하여야 하므로 죄형법정주의 보다 세부적으로는 소급효금지의 원칙에 위배할 여지가 있고,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도 위배되는 제도라고 판단할 수 있다<sup>84)</sup>고 한다.

또 다른 학자의 견해로는 헌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은 형사 관계인의 법적 안정성과 신뢰보호를 위하여 가능한 한 한 번의 절차에서 처벌 할 수 있는 것은 한 번의 절차로 끝내야 한다는 원칙이다. 여기서 이중처벌금지에서 금지되는 두 개의 처벌이 반드시 형벌이어야 하는지에 관하여는 각국의 예가 달리 받아들일 수 있지만,<sup>85)</sup> 우리 헌법 제13조 제1항은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신상공개제도는 형벌이므로 헌법 제13조 1항에 위반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신상공개제도가 형벌임을 주장하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sup>86)</sup> 형벌이란 하나의 행위에 대하여 형법에 근거하여 국가가 행위자로부터 이정한 법익을 박탈하는 것인데, 신상공개제도는 형벌로서 이런 요건을 충

83) 권창국, 청소년성매매행위에 대한 규제방법으로서 신상공개제도에 관한 검토, 형사정책연구 제12권 제2호, 2001, 218면.

84) 권창국, 위의 논문, 219면.

85) 미국의 경우 수정헌법 제5조에 규정된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은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두 개의 처벌이 모두 형벌로서 성격을 갖는 처벌이라면 금지되는 이중처벌에 해당되고, 독일의 경우에는 독일기본법 제103조 제3항에서 명시적으로 형법을 규정하므로, 이중 처벌금지의 원칙은 과해지는 두 개의 제재가 형벌인 경우만 적용되는 것으로 본다. 김승대,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대한 헌법해석의 재검토, 공법연구 제35집 4호, 2007, 381-386면 참조.

86) 김경제,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공법연구 제32집 제2호, 2003, 12, 359-362면 참조.

족한다는 것이다. 우선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는 행위를 신상공개의 매개행위로 포착함으로써 형벌에서 행위요건은 충족되고, 그 행위에 신상공개라는 제재를 가하는 근거법인 청소년성보호법이 성을 매수하는 행위에 어떤 제재가 주어지는지 범죄와 형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형법에 해당되고, 신상공개의 주체가 청소년보호위원회이므로 국가성의 요건도 충족되며, 아울러 신상공개에 따라 공개되는 자는 명예라는 법익이 박탈되므로 형벌로서의 모든 요건을 충족한다는 것이다.<sup>87)</sup> 그 결과 당시의 신상공개제도와 그것을 규정한 청소년성보호법 제20조는 헌법 제13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이중처벌이 설사 형벌만의 이중처벌을 의미한다고 할지라도 헌법 제13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 나. 인격권

우리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음을 천명하면서,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인간은 누구나 각자의 자유의지에 따라 스스로 운명을 개척하고 자신의 인격을 자유롭게 발현하여 행복을 추구해 갈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권리는 타고난 용모나 재능, 학력, 빈부, 성별 등을 가리지 않으며, 심지어 범죄인에게까지도 한 인간으로서 가지는 기본적인 존엄과 가치는 존중되고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헌법이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이자 지향하는 기초적 이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국가가 범죄사실과 같이 개인에 대한 사회적 평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자료를 함부로 일반에 공개할 경우, 그 개인의 긍정적인 면을 포함한 총체적인 인격이 묘사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부정적인

87) 김경제, 위의 논문, 360면.

측면만이 세상에 크게 부각됨으로써 장차 그가 사회와 접촉·교류하며 자신의 인격을 자유롭게 발현하는 것을 심대하게 저해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사회활동을 통한 개인의 자유로운 인격발현을 위해서는, 타인의 눈에 비치는 자신의 모습을 형성하는 데 있어 결정적인 인자가 될 수 있는 각종 정보자료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 다시 말하여 사회적 인격상에 관한 자기결정권이 보장되어야 하고, 국가는 이를 최대한 보장할 책무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신상공개제도는 본인이 밝히기를 꺼리는 치부를 세상에 공개하여 위와 같은 사회적 인격상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현저하게 제한함으로써 범죄인의 인격권에 중대한 훼손을 초래한다고 볼 것이다.<sup>88)</sup>

신상공개제도는 소위 ‘현대판 주홍글씨’에 비견할 정도로 수치형과 매우 흡사한 특성을 지닌다. 즉, 현행 신상공개제도는 대상자를 독자적 인격의 주체로서 존중하기보다는 대중에 대한 전시(展示)에 이용함으로써 단순히 범죄퇴치수단으로 취급하는 인상이 짙다. 그러나 이는 비록 범죄인일망정 그가 지니는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것이 국가적 의무임을 천명한 우리 헌법의 이념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청소년 성매매의 폐습을 치유함에 있어서는, 형벌이나 신상공개와 같은 처벌 일변도가 아니라, 성범죄자의 치료나 효율적 감시, 청소년에 대한 선도, 기타 청소년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 추진과 같은 다양한 수단들을 종합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고, 오히려 전체 청소년 성매수 사건 중 적발되는 사건의 비율이 극히 미미한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이와 같은 근본적인 예방책에 치중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함에도 국가가 이러한 노력을 다하기도 전에 개인의 인격권에 중대한 침해를 가져올 수 있는 신상공개라는 비정상적인 방법

88) 헌재 2003.06.26, 2002헌가14, 판례집 제15권 1집, 650면.

을 동원하는 것은 최소침해성의 관점에서도 문제가 있다.

형벌은 개인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중대한 침해를 가져오는 탓에 국가적 제재의 최후수단(ultima ratio)으로 평가된다. 그런데 이미 그러한 형벌까지 부과된 마당에, 형벌과 다른 목적이나 기능을 가지는 것도 아니며, 형벌보다 더 가혹할 수도 있는 신상공개를 하도록 한 것은 국가공권력의 지나친 남용이다. 더구나, 신상공개로 인해 공개대상자의 기본적인 권리가 심대하게 훼손되는 데에 비해 그 범죄억지의 효과가 너무도 미미하거나 불확실하다. 이러한 점에서도 법익의 균형성을 현저히 잃고 있다고 판단된다.

결국 청소년 성매수자에 대한 신상공개는 대상자의 인격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되어 위헌의견을 개진하였다.<sup>89)</sup>

## 다. 평등의 원칙

법 제20조 제2항 제1호는 범죄방지를 이유로 청소년 성매수자의 사회적 인격상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제한한다. 그런데 일반 범죄자 및 일부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신상공개를 통한 위와 같은 제한을 허용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범죄방지의 필요성은 일반 범죄자등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인정된다. 그러므로 양자를 차별하는 것이 과연 정당화될 수 있는지는 헌법상 해명의 필요가 있다.

청소년 성매수자가 신상공개되는 것은 일반 범죄자등 보다 죄질이나 법정형이 더 무겁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보다 더 높아서가 아니다. 그리고 청소년에게 성매수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한 자 등은 모두 청소년 성매매를 유발·조장하는 범죄자들로서, 청소년 성매수자보다

89) 헌재 2003.06.26, 2002헌가14, 판례집 제15권 1집, 627-628면.

더 무거운 법정형이 예정되어 있는 데도, 신상공개는 되지 않는 점에서 ‘청소년의 성 보호’ 라는 보호법익의 특수성이 신상공개 여부를 나누는 결정적인 기준이 되고 있다고 할 수도 없다.

결국 일반 범죄자등과 청소년 성매수자를 차별할 만한 다른 합리적 이유는 찾기 어렵고, 다만 성인 남성들에게 청소년 성매수행위를 하지 말라는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려는 입법의도만 유일한 차별근거가 아닌가 생각된다.

그러나 이러한 입법의도가 청소년 성매수자에 대한 신상공개를 정당화할 만큼의 성질이나 비중을 가지고 있지 않음은 이미 앞에서 인격권의 침해 여부를 논하면서 살펴본 바와 같다. 즉, 신상공개는 인간 존엄성을 보장하는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측면이 아주 강할 뿐만 아니라, 이미 한번 형사처벌을 받은 자의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지나치게 가로막는 등의 부작용이 큰 반면, 범죄의 억지나 예방에는 그다지 실효성이 없는 제도로서, 위와 같은 입법의도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는 너무나 과도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일반 범죄자등과는 달리 청소년 성매수자만 차별하여 신상공개를 하는 것은 그 차별의 이유와 차별의 내용 사이의 적절한 균형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위헌의견을 제시하였다.<sup>90)</sup>

### 3. 사 견

성범죄자의 신상공개와 관련하여 다양한 법리적인 검토를 하였는데, 최근 국가가 운영하는 인터넷 「알림e」을 이용하여 성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문제에 대하여 또 다른 이슈가 제기 되고 있다. 기존 청소년성

90) 헌재 2003.06.26, 2002헌가14, 판례집 제15권 1집, 628-629면.

보보법상 신상공개제도에 관하여도 학자들과 우리 헌법재판소는 첨예하게 대립하였는데, 이에 대한 연장선으로 인터넷을 이용한 성범죄자 신상공개에 대한 문제도 학자들간에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도 메건법이 제정되면서 이에 대한 찬성, 반대가 심각하게 하게 대립되었다.

법적인 측면에서 보면, 뉴저지주의 메건법은 대법원에서 위헌성이 제기되었고,<sup>91)</sup> 물론 이에 대한 판결에서는 헌법에 합치된다고 합헌 판결을 하였다. 또한 메건법은 연방법원 차원에서도 위헌성 문제가 제기되었는데, 주된 쟁점으로는 우리 헌법재판소와 유사하게 사후법 금지조항, 이중위험 금지조항 위반, 연방수정헌법 제8조의 위반, 절차적인 적법절차 조항 위반, 프라이버시 권리 침해 등의 문제인데, 연방대법원까지 가게 되었다.

결국 미 연방대법원까지 메건법의 위헌 문제가 제기되었지만, 메건법을 지지하던 수사기관, 피해자 단체, 이를 지지한 변호사, 학자, 시민단체 등의 바람대로 합헌결정을 내리게 되었다. 물론 아직도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는 제기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신상공개와 관련하여 개인적인 사건으로는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의 신상공개는 앞으로 발생할 성범죄의 재범방지를 위하여 더욱 적극적으로 신상공개가 확대해야 할 것으로 본다. 2011년 6월 정부는 성범죄 알림e' 사이트를 오픈하면서 앞으로 잠재적 성폭력 범죄자의 범행을 억제하고 자율적인 성폭력 범죄 예방에 많은 도움을 주게 될 것으로 기대하였다.

그러나 얼마 전 기사에 의하면 「성범죄 알림e」에 공개된 사진을 통하여는 사진이 명확하지 않아 이웃에 사는 성범죄자를 확인하기 어렵다든

91) Doe v. Poritz, 142 N.J. 1, 662 A. 2d 367, 1995.

가 성범죄자가 가명을 사용하여 실제 이웃에 살고 있지만, 아무도 자기 주위에 성범죄자의 거주사실을 알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인터넷 및 고지를 통한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로 만족하는 것보다 이를 확실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신상정보공개 제도에 부수적인 것들을 철저히 보완하여 정부는 성범죄자 재범방지에 임해야 할 것이다.

또한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에 시행에 따라서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들은 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문제점을 찾아 조속히 보완해야 할 것이다.

## 제2절 성범죄 재범방지를 위한 전자발찌제도의 검토

성범죄자 신상공개와 더불어 이들 재범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가 전자감시제도이다. 보통 전자발찌제도라고도 한다. 전자발찌는 전자파를 발신하고 추적하는 원리를 이용하여 위치를 확인하거나 이동경로를 탐지하는 일련의 기계적 설비를 성범죄 대상자의 발목에 부착하는 것을 말한다. 즉 GPS 및 이동통신망을 활용하여 24시간 성범죄자의 이동경로를 추적하고 그 위치정보를 활용, 관리하는 최첨단 업무시스템이다.

이는 우리나라에서는 성폭력사범의 높은 재범률과 성폭력 피해의 심각성, 국민의 불안감 등에 대한 특단의 대책으로 도입되었다. 2008. 9. 1부터 성폭력범죄자를 대상으로 최초로 시행되었으며, 2009. 8. 9부터는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까지 그 대상범위를 확대하였고, 2010. 7. 16.부터는 살인범에게도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게 하였다. 아울러 법 시행 이전에 제1심 판결이 선고되어 징역형의 집행중에 있거나 집행을 종료한 지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도 전자발찌부착을 소급하여 적용하

도록 하였다. 범죄자들에게 전자발찌를 채우는 문제에 대하여 기본권 보호와 관련된 주장 즉, 다시말해 헌법적으로는 이중처벌 금지의 원칙,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 평등의 원칙, 신체의 자유 원칙, 개인의 사생활 비밀과 자유 보장의 원칙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반면 인권보호도 중요하지만 반인륜적 범죄예방 차원에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대립되었다. 하지만 전자발찌 제도를 도입하였고 최근에는 더 강력한 개정을 하였는데, 예를 들면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특정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부작기간을 최장 30년 범위에서 부작하여하도록 하였다.

전자발찌제도는 재범방지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으나, 아직도 이에 대한 긍정과 부정이 대립되고 있다. 이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sup>92)</sup>

## 1. 긍정론

정부가 전자발찌 제도를 시행하면서 이에 대한 효과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첫째, 전자발찌제도는 과학적 재범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국민들이 특정범죄에 대한 불안감을 감소시키고, 둘째, 범죄 피해자에 대하여 접근 금지를 실시하여 범죄피해자의 보호를 강화할 수 있다. 셋째로 성범죄를 비롯한 특정범죄자에 대한 24시간의 전자감시를 통한 재범의 기회를 사전에 미리 차단할 수 있으며, 넷째, 전자감독 의무 등의 위반시 신속하고 강력한 형사처벌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성범죄자를 비롯한 특정범죄자의 위치정보를 수사 및 재판자료로 활용함

92) 조규범, 「전자감시제도」 현안보고서, 국회도서관 입법지식DB, 2007, 참조.

으로써 범죄자에 대한 수사 및 재판에 있어 그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전자감시제도의 긍정적인 면을 검토해보면, 첫째, 전자감시제도는 교도소 과밀수용 완화하여 수용인원의 점차적인 감소가 가능하며, 이로 인한 구금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교도소 수용 없이도 전자장비를 이용한 밀도있는 감시를 통해 수용의 목적을 충족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둘째, 대상자에게 사회 안에서의 평범한 일상생활을 가능하게 해 줌으로써 범죄자의 재사회를 촉진하고, 법원에서 다양한 조건의 판결을 선고할 수 있도록 탄력성을 부여하는 등의 긍정적 측면이 있다.

셋째, 전자감시를 통해서 시설내 구금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폐해, 즉 범죄감염의 위험이나 일상생활에 대한 단절 등이 배제될 수 있다.

## 2. 부정론

반면 전자감시제도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을 살펴보면, 첫째, 전자감시제도는 인간의 존엄성에 반한다는 것으로 기계에 의한 인간의 감시라는 측면에서 기본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특히,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제도와 관련하여 헌법적으로는 이중처벌 금지의 원칙이 문제가 되는데 즉, 형사 처분을 이미 받은 사람에게 다시금 전자발찌를 채워 감시하는 것은 이중처벌이 될 수 있다. 일부 다른 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성범죄자에 대한 전자발찌 제도는 대부분 가석방을 대상으로 하는 일종의 ‘재택(在宅) 교도소’이다.

반면, 형기를 다 마친 성범죄자에게 전자발찌 착용을 의무화하는 것은 일종의 ‘전자적 보호감호제’라 할 수 있으며, 보호감호제 자체에 대한 비판도 많은데 이를 전자적인 방식으로 구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설

령 형기를 다 마치지 않은 가석방자에게 전자발찌 착용을 의무화한다면 이는 결과적으로 성범죄자에 대한 형량을 낮추는 꼴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과잉금지 원칙에 부분에 있어 위치 추적만으로는 성범죄를 예방하는 실효성에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데, 전자발찌를 깜박 잊고 풀고서 출근한 경우 이를 일종의 도주로 간주해 처벌한다면 이는 과잉통제의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평등의 원칙, 신체의 자유 원칙, 개인의 사생활 비밀과 자유 보장의 원칙<sup>93)</sup>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한 2011년의 사례로 살인 범죄로 13년간 복역을 하고 가석방 기간 중 전자발찌를 착용한 40대 남자가 자살을 하여, 전자발찌에 대한 소급 적용 문제를 제기하기도 하였다.<sup>94)</sup>

둘째로는 막대한 비용이 들어간다는 문제점이 제기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연간 1억 달러 이상의 비용이 소요된다고 추정하고 있다.

### 3. 관련 판례

피고인은 2008. 12. 부산 수정동에 있는 ○○아파트 아래 주차장에서 귀가하는 피해자(여, 17세)를 뒤따라가 왼손으로 그녀의 입을 막고, 목에 과도를 들이대며 “소리 지르지 마라”고 협박하여 그녀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자신의 성기를 10분가량 빨게 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고, 또

93) 프라이버시 침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데, 이는 전자발찌가 그 사람의 성범죄 관련 행위만 골라서 검사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개인의 모든 행적이 원격 감시되기 때문에 프라이버시 침해가 일어날 우려가 있다.

94) 서울신문, 「목욕탕도 못가…」 전자발찌 찬 40대男 자살, 2011. 1. 13일자.

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에 대하여 전자발찌를 부착하여 장래의 성폭력범행을 방지하겠다는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는 데 있어 검사는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하였다.<sup>95)</sup>

이 사건의 피고인은 흥기인 과도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위협하여 추행한 것과 더불어 불과 2개월에 사이에 걸쳐 강도, 강도예비, 절도의 각 범행을 범하여,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겁다고 법원은 판단하였다.

특히,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피부착 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전자장치 부착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위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의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였고, 더불어 항소심도 성폭력범죄 중 친고죄에 있어서 기소 전에 소추요건인 피해자의 고소가 없거나 취소되는 경우에는 부착명령을 독립적으로 청구할 수 없는 점과, ‘현장추적 싸이렌’이라는 TV 프로를 보고 충동적으로 이 사건 성폭력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이유를 들어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원심과 항소심에서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기각하였다.<sup>96)</sup>

### 3. 사건

95) 부산지방법원 2009.4.17. 선고 2009고합17,2009전고6(병합) 판결.

96) 부산고등법원 2009.7.9. 선고, 2009노343,2009전노8(병합), 판결

우리나라에서 전자발찌 제도 시행이후 2011년 3월 28일까지 범죄자 총 1,208명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하였는데, 이중 성폭력 등과 같은 종류의 범죄를 다시 저지른 비율은 0.4%, 성폭력범죄를 포함해서 다른 범죄들까지 포함하더라도 재범률이 0.9% 밖에 되지 않는 현저히 낮아진 재범률을 보여주어, 전자발찌가 재범억제에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최근 5년간 강도범죄 전과자가 같은 종류의 범죄를 저지른 비율은 무려 27.8%나 되어, 강도죄에 대해서도 전자감시제도를 확대하여 강력 범죄로부터 국민을 확실하게 보호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래서 법무부에서는 강도죄까지 전자감시제도를 확대하는 내용의 ‘특정 범죄자 위치추적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sup>97)</sup>

이러한 수치만 보더라도 전자발찌 제도의 시행 후 성범죄예방의 효과는 확실히 나타나고 있다고 보여진다. 이러한 결과에 의해 앞으로 범죄자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범죄행위를 하면 반드시 검거된다는 심리적인 압박감을 재범방지 차원에서라도 심어줄 필요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부정론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하나의 범죄에 징역형을 집행하고 다시 전자발찌를 채우는 것은 두 번 처벌하는 이중처벌에 해당한다는 것과 범죄자라고 하더라도 개인의 기본권 침해와 관련된 문제만큼은 앞의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와 더불어 지속적으로 검토해야 해야 할 것이다.

97) 외국의 경우, 전자발찌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미국, 프랑스, 뉴질랜드 등에서는 살인과 성폭력 뿐만 아니라 강도 등 대부분의 강력범죄에 대하여도 전자감시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국 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대상범죄
미국 캘리포리아, 플로리다 등 24개주, 네덜란드, 스페인(마드리드), 뉴질랜드	모든 범죄
프랑스	살인, 성폭력, 폭행치사, 상해, 체포, 감금, 폭발물치사, 방화, 미성년자포르노, 폭력물 제작 등
호주 빅토리아 주	성폭력

## 제5장 결론

2000년 이후 우리 사회는 증가하는 성범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대두되고, 재범방지를 위해 정부는 다양한 제도들을 보완하고 있는데, 특히, 대법원의 양형기준을 강화하고, 공소시효 폐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인터넷 공개를 포함)하고, 성범죄자 신고포상금, 전자발찌 착용 대상자의 확대 등을 통하여 아동 및 청소년,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의 범죱행위를 막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을 하였다.<sup>98)</sup>

성범죄자의 범죱행위를 막기 위한 이러한 제도 개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2011년 9월 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 발생한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 중 16세 이상 20세 이하 청소년은 4,529명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2007년의 3,159명보다 43% 늘어난 수치로 같은 기간 전체 성폭력 피해자 증가율인 33%를 10% 포인트 상회했다. 13세 이상 15세 이하의 성폭력 피해자는 2010년 1,656명으로 2007년의 1,220명보다 36% 늘어 전체 증가율보다 높다.

이러한 증가율에도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아동대상 성범죄 신고율은 10%미만으로 추산되고 있고, 기소율은 40%, 구속율은 36%에 불과하다고 한다.<sup>99)</sup> 사실 이것은 아동 대상 뿐 아니라 전체 성범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처럼 낮은 신고율에 대하여도 심도있는 대안이 필요하다고 본다.

98) 이수정 교수는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더 이상 외국제도 도입보다는 지금까지 나왔던 제재 방안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억제력을 발휘하도록 할 것인지 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또한 성범죄의 근본 원인을 좀 더 광범위하게 조사, 연구하여 각 유형의 성범죄자들에게 적합한 처우를 적용하려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99) 표창원, 아동성폭력 재범방지정책들에 대한 검토, 국가인권위원회, 2010. 7. 9면.

이처럼 발표된 통계자료를 보더라도 국민들의 불안은 심하게 고조 될 수 밖에 없는데, 실제 여러 매체를 통하여 거의 매일 성범죄 관련 기사들이 보도되다 보니 국민들이 체감되는 불안감은 더욱 크다 할 것이다.

국가는 국민들을 성범죄자들로부터 지키는 것이 커다란 책임과 의무이다. 이에 수반하여 국민들은 수사기관인 경찰과 검찰 등에 성범죄자들에 대한 더욱더 강력한 대응과 예방을 주문하고, 성범죄의 전과가 있는 범죄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강화 및 대책마련에 대하여도 재범방지를 위하여 그 요구가 한층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국민들의 요구는 결국 성범죄자에 의한 범죄행위로 부터 성범죄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대책의 일환으로 재범방지를 위한 성범죄자 신상공개, 전자발찌등에 대한 많은 비판에 대하여 제도적, 법리적인 검토를 하였다.

미국의 경우도 성범죄자 신상공개와 관련된 메건법이 제정되면서 이에 대한 주, 연방법원, 연방대법원 등 헌법상 위헌 문제와 더불어 다양한 찬성 및 반대가 심각하게 대립되었다. 결국 연방대법원은 메건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외에도 영국, 일본, 프랑스 등 우리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와 유사한 열람, 공지 등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도 성범죄자의 신상공개, 그리고 최근의 「인터넷 알람e」를 이용해 공개하는 문제에 대하여 학자, 법조인, 교수 등 아직도 많은 부분에서 법리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물론 현행법상 성범죄자 신상정보공개가 법리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당연히 관련 법률을 개정해서라도 피해자, 피의자 등의 인권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현재 우리사회는 많은 아동, 청소년, 여성들이 성폭력 범죄에 노출이 되어있다. 법률상 제기된 문제점을 통해 관련 법률

의 개정을 기다리는 순간에도 내 가족과 친구, 이웃은 언제든지 성범죄의 대상이 되고 있다.

성범죄자 신상정보공개 주된 목적은 그 범죄자에 의한 또 다른 성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고자하는 것이다. 개인적으로 아동, 청소년,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는 현재보다 더 적극적이고 강력한 신상공개, 신고 포상금, 전자발찌 등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더불어 기존에 제시되었던 정책과 제도 등에 대한 실효성 측면에서 신중한 검토와 분석이 반드시 같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실효성 없는 정책과 제도는 성범죄 예방에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제도적인 측면에서 우선 순위를 법리적인 논리보다도 먼저 국민들의 안전과 성범죄 피해자들 당사자와 그 가족을 생각해야하고, 그들의 인권에 우선적인 초점이 맞추어져야 할 것이다. 그 다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관련 법률을 개정하면 될 것이다. 모든 사람이 공감하는 완벽한 법률이 제정되기 전까지 항상 성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있을 수 밖에 없다. 이들의 고통을 역지사지(易地思之)의 마음으로 한 번쯤은 헤아려 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성범죄자에 의한 또 다른 재범방지를 위해 올바르게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사회적 제도의 정비 즉, 다양한 사회복지, 수감시스템, 치료, 교육, 교정정책 등 각종 사회정책을 연계한 종합적인 대책도 같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제도들이 정착될 때 비로서 우리 사회는 성범죄 없는 사회에 다가설 수 있으며, 사회적 약자일 수 밖에 없는 아동, 청소년, 여성들은 성범죄로부터의 위협과 불안에서 자유로울 것이며, 더불어 국민들은 더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사회 환경이 조성되리라 본다.

## 【 參考文獻 】

### I. 國內文獻

- 경찰청, 「2011 경찰백서」, 2011. 10.
- 권창국, 「청소년성매매행위에 대한 규제방법으로서 신상공제도에 관한 검토」, 형사정책연구 제12권 제2호, 2001.
- 김경제,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공법연구 제32집 제2호, 2003, 12.
- 김상겸, 「청소년 성 보호와 신상공개제도」, 토지공법연구, 2002.
- 김승대,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대한 헌법해석의 재검토」, 공법연구 제35집 4호, 2007.
- 김현원,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와 재범방지」, 아동성폭력 재범방지정책과 인권토론회, 2010.
- 박선영,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있어서 세부정보공개제도(안)의 검토」, [신상공개제도 및 세부정보공개제도(안)에 대한 공청회] 국가인권위원회, 2004.
- 박선영, 「신상공개제도 합헌결정에 대한 비판적 검토」, 헌법학 연구 제9권 제4호, 2003.
- 법무부, 「전자발찌 최장 30년까지 채운다 - 형 확정된 성폭력범에게 소급적용, 살인범도 부착가능」, 2010. 3. 31, 보도자료.
- \_\_\_\_\_,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 관련 법령해석」, 2010. 2. 3.
- 일본대사관, 「일본의 우범자관리실태 자료보고」, 동경주재관, 2010. 5. 17([www.mofat.go.kr/japan](http://www.mofat.go.kr/japan)).
- 정진수, 「고위험범죄자 재범방지를 위한 기관간 연계방안 -통합적 범

- 죄자 관리체계의 관점에서」, 국회 우범자관리제도 선진화 방안 정책토론회, 2011. 2. 17.
- 조규범, 「전자감시제도 현안보고서」, 국회도서관 입법지식DB, 2007.
- 정현미·윤지영,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와 미국 매간법의 비교고찰」, 이화여자대학교 법학논집 제12권 1호, 2007.
- 주프랑스공화국대사관, 「프랑스 경찰의 우범자 관리실태 자료」, 경찰청 내부자료, 2010. 6. 4.
- 황승흠·황성기,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에 관한 연구」, 청소년보호위원회, 2001.
- 표창원, 「아동성폭력 재범방지정책들에 대한 검토」, 국가인원위원회, 2010. 7.
- 미 포트워스 시경, 「성매수자 신상 TV 공개」, 경찰청 자료, 2008.

## II. 外國文獻

- Autumn Long, “Sex Offender Laws of the United Kingdom and the United States: Flawed Systems and Needed Reforms,” *Transnational Law and Contemporary Problems*, Winter 2009.
- Elizabeth A. Pearson, “Status and latest development in sex offender registration and notification law” , Bureau of Justice Statistics, National Conference on Sex Registries, April 1998.
- Geneva(Reuters), Swiss will jail for life incurable criminals, February 09, 2004.
- Meghann J. Dugan, “Megan's Law or Sarah's Law? A Comparative Analysis of Public Notification Statutes in the United States

and England,” Loyola of Los Angeles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Review, Vol. 23, October, 2001.

DELBERT W. SMITH AND BRUCE M. BOTELHO, PETITIONERS v. JOHN DOE I ETAL No 01-729.

Menendez Bernard, “The Constitutional Implication of Megan's Law: Permissible Regulation or Unconstitutional Intrusions?” , 24 New England Journal on Criminal and Civil Confinement 1, Winter 1998.

Human Rights Watch, No Easy Answers: Sex Offender Laws in the US, 2007.

Jason Woor · Hazel Kemshall, The operation and experience of Multi-Agency Public Protection Arrangement(MAPPAs), Home Office Online Report, 2007.

Laura A. Ahearn, “Megan's Law Nationwide and The Apple of My Eye Childhood Sexual Abuse Prevention Program” , Prevention press USA, 2001.

Lisa Gursky Sorkim, “The Trilogy of Federal Statues” , Bureau of Justice Statistics, National Conference on Sex Offender Registries, April 1998.

Sentencing and Offences Unit, Home Office의 Sex Offenders Act 1997, Home Office Circular 39aus, 1997, 11. Aug, 1997.

Stern, Das Staatsrecht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Bd. I, 2 Aufl., München, 1984.

The Sexual Offences Bill[HL]: Policy Background” Research paper 03/61. House of Commons(UK), July 10. 2003.

### Ⅲ. 헌법재판소 및 법원 판례

헌재 1990. 9. 3. 89헌가95.

헌재 1990. 9. 10. 89헌마82.

헌재 1991. 9. 16. 89헌마165.

헌재 1994. 6. 30 선고 92헌바38.

헌재 1998. 5. 28. 96헌바4

헌재 1999. 7. 22. 98헌바14.

헌재 2003. 6. 26 선고 2002 헌가 14.

헌재 2003. 12. 18 2001헌바 91.

부산지방법원 2009.4.17. 선고 2009고합17,2009전고6(병합), 판결.

부산고등법원 2009.7.9, 선고, 2009노343, 2009전노8(병합), 판결.

### Ⅳ. 기타

MBN, 「성을 거세당한 성폭력범... 과연 효과가 있을까」, 2012. 6. 8.

경향신문, 「강도범도 ‘내년부터 전자발찌’ ...법개정 추진」, 2011. 1. 20.

법률신문, 「전자발찌 강도범에도 부착」, 2011. 1. 24.

서울신문, 「목욕탕도 못가...」 전자발찌 찬 40대男 자살」, 2011. 1. 13.

서울신문, 「전자발찌 30대, 출소 6개월만에 또 성범죄」, 2011. 6. 19.

연합뉴스, 「울산서 성범죄자에 전자발찌 부착.. 첫 소급명령」, 2011. 1. 24.

조선닷컴, 「강도범도 전자발찌 채운다...법 개정 추진」, 2011.1.20.

포커스 신문, 「강도범도 전자발찌...재범률 월등히 높고 죄질 나빠」, 2011. 1. 21.

www.suntimes.com(2011. 5. 20일 방문)

www.lapdonline.org/, America LAPD homepage(2012. 5. 30 방문)

www.asahi.com/english/nation /TKY200501050094.html(2012. 6. 4검색)

www.japantoday.com/(2012. 6. 4 검색)

www.japantimes.co.jp/text/nm20041231a1.html(2012. 6. 4 검색)

www.47news.jp/CN/200502/(2012. 6. 13 검색)

www.japantimes.co.jp/ text/nm20050101a2.html(2012. 6. 4 검색)

www.47news.jp/CN/200804/ CN2008042501001109.html(2012. 6. 5검색)

「訴取り下げ無効」請求を退ける小1 女児誘拐殺人事件で奈良地裁,

2008. 4. 25 산케이 뉴스.

控訴取り下げは有効=奈良小1 女児誘拐殺人-大阪高裁, 지지통신

(2008. 5. 22)

奈良女児誘拐殺害、小林死刑囚の特別抗告棄却 最高裁, 아사히신문

(2008. 7. 9)

控訴取り下げは有効 女児誘拐殺人の小林死刑囚, 47 News(2008. 7. 9)

책임연구보고서 2012-08

## 성범죄자 신상정보공개와 재범방지를 위한 법리적검토

---

2012년 12월 31일 발행

발행인 : 조 요 섭

발행처 : **치안정책연구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연남로 74

홈페이지 : [www.psi.go.kr](http://www.psi.go.kr)

---

**이 책의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이 책자에 게재된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치안정책연구소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혀둡니다.



**POLICE SCIENCE INSTITUTE**